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1995. 9.

姜 元 植 (국제연구실 연구위원)

金 圭 倫 (국제연구실 연구위원)

申 相 振 (국제연구실 연구위원)

諸 成 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全 東 震 (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 문

최근 북한은 군사정전위로부터 북한군 철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 소환 및 폴란드의 중감위 대표 철수 등 休戰協定 死文化戰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南韓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直接對話를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기존 전략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서, 북한은 앞으로도 對美 平和協定 체결전략을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의 의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변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탕위에 바람직한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을 강구·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가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 입안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1장 서론은 강원식, 제2장 북한의 주장은 제성호, 제3장 관련국 입장은 김규륜(미국), 신상진(중국), 전동진(일본), 강원식(러시아), 제4장과 제5장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강원식, 제6장 국제적 보장은 전동진, 제7장 결론은 제성호에 의해 각각 집필되었다.

1995. 9.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빈 면

이 연구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의 의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변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탕위에 바람직한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을 강구·제시한 것이다.

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에 대한 北韓의 주장

북한은 60년대 초반이래로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제기하여 왔는데, ①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 ②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③남북 불가침공동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 주장, ④포괄적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 등 대체로 4단계의 변화 과정을 보여왔다. 특히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란 ①남북 불가침 실천(불가침선언 채택 자체는 아님), ②북·미 평화협정 체결, ③남북한 군비축소, ④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機構 및 體制·法制度(각종 협정 포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북한 주장의 핵심은 實質的 當事者論에 입각한 北·美 平和協定 체결 주장이다.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背景과 意圖는 ①체제유지전략, ②대남전략, ③대미 협상전략의 3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체제유지전략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현재 심한 외교적 고립, 이데올로기적 위협, 경제난, 권력승계 등 總體的 危機狀況에 처해 있으며,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는 안전판으

로 고안된 것이 핵무기 개발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 및 관계개선이다.

둘째, 對南戰略次元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대량 감축 또는 완전철수, 미국의 對韓 핵우산 철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등을 통한 聯邦制 統一기반 조성 및 대남 적화통일 실현으로 집약된다.

셋째, 對美 協商戰略次元에서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①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 이간 및 국제공조체제 와해 유도, ②대미 협상력 제고를 통해 당면한 경수로지원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 및 최대한의 실리 확보, ③「한반도문제의 북·미간 문제화」, 즉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향후의 북·미 고위급회담(외교적 수준의 고위급 내지 준 고위급 회담 또는 고위군사당국자간 회담)에서 협상의제화하는 등의 目標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하에 포괄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한다는 북한의 입장은 결국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오직 미국과 해결한다는 南韓排除戰略으로 집약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停戰協定 死文化戰略과 北·美 直接協商戰略을 동시에 구사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停戰機構를 조직적으로 無力化시키고 軍事分界線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정전협정체제 파괴의 責任을 미국에 전가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소위 中間措置라는 것을 고안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통해 미국과의 高位軍事會談 내지 將星級接觸을 시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동 문제와 北·美 基本合意文 이행을 연계 또는 전제조건화하고 있다.

2.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에 대한 關聯國 立場

美國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 평화체제 구축시까지는 現 休戰體制가 이행·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하며, 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하여 南北 平和協定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國際的 保障方式으로서 미국은 미·중이 남북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2+2」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協商 進展을 위해 3者會談 또는 4者會談 방식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中國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회담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등 일반적으로 北韓의 立場에 동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北韓의 요청에 따라 판문점 군정위 중국대표를 소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北·美 平和協定 체결이 北韓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反對立場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中國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며, 韓國도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방식과 관련, 「2+2」방식 또는 4자회담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議體 형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동 기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日本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서 자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특별한 제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南北 平和協定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美·中보다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 자국이 배제된 「2+2」 보다는 「2+4」 구도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보장국으로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參與를 制度化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또는 유엔을 통한 평화보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바,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으나, 평화체제로의 轉換方式, 특히 평화협정의 締結 主體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 러시아의 개입여지 확보 등의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北·美 平和協定 체결을 반대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과 관련, 러시아는 韓半島問題에 직접·적극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美·中만에 의한 「2+2」 방식에는 반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호할 것이다.

3.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基本原則

한국은 광복50주년 대통령경축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基本原則을 견지하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첫째, 南北 當事者解決原則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民族自決原則과 當事者解決原則에 입각하여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문제도 남북 당사자간에 논의·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국의 협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實效性 保障原則이다. 우선 한국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여 주변국가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획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한다.

셋째, 南北間 既合意事項 尊重原則이다. 즉 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9조의 정신에 따라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도 유지되고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4. 平和體制 轉換形態: 남북평화협정 체결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형태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두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왔는데, 두가지 방법의 長點을 취하고 短點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남북한의 현실에 부합하는 독특한 방안이 모색·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도 아닌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그 명칭을 南北平和協定이라고 한다.

즉 어떤 형식의 것이든지 간에 전쟁의 종료와 평화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文件은 모두 평화협정(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이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형식의 평화협정이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방법을 추진하되,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상기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의 장점으로 제기되고 있듯이,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평화협정의 내용에서 戰爭原因과 戰爭責任 糾明問題 및 賠償·補償問題 등의 논의를 우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방법의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남북평화협정을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잠정적 성격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平和體制 轉換時期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이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원칙을 준수하되, 북한의 정책대응과 주변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조기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5. 政策推進基調 및 推進構圖

「先 평화체제 기반 조성, 後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先 평화협정 체결, 後 평화체제 구축」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態度 變化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段階 接近構圖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단계별 발전구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즉 기본구도로서 段階別 推進構圖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제1단계에서 곧바로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며, 각 단계별 정책도 반드시 당해단계에서가 아니더라도 융통성있게 다른 단계에서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제1단계(停戰體制 유지)에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한다.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유지·존속되어야 할 것인 바, 군사정전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제2단계(不可侵 附屬合意書 실천)에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미 관계개선 교섭과정이 진전되면서 반드시 제기될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우회할 수 있다.

제3단계(南北平和協定 체결)에서는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자격을 확인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북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강구·추진한다.

6. 停戰體制 유지 모색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維持·遵守原則」에 따라 군사정전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추진한다.

첫째, 한국은 당분간 유엔사와의 협조하에 북한에 대해 군정위 소집을 요구한다.

둘째, 유엔사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對美 直接 軍事接觸 기도를 저지한다.

셋째, 북한측의 정전협정 및 군사정전위 무실화 기도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고 國際共助를 통한 대북 압력과 설득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만일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것은 마땅히 남북한이 기합의한 바 있는 南北軍事分科委員會 또는 南北軍事共同委員會가 되어야 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정전기구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모두 無爲로 될 경우에도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정전위원회는 1991년 3월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黃源卓 소장으로 교체한 이래 단 한번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여 왔다.

둘째, 북한은 군사정전위 철수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現 停戰協定을 준수하여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현 상태로 평화를 유지하고 판문점 直通線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정위 무실화에도 불구하고 휴전체제가 즉각 와해되지는 않는다.

셋째, 정전협정은 당사자 일방이 정전기구로부터 철수했다고 해서 또는 그 無力化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조치로 인해 정전기구가 사실상 기능정지 또는 유명무실화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的 文書로서의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91년 3월

이후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이 정전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전협정 사문화 기도에 과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정전기구 정상화를 적극 촉구하는 등 原則論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궁극적으로 휴전체제 정상화 보다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7. 不可侵 附屬合意書 실천

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 군비축소를 완성하면,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은 대미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지만,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활용하여 軍備統制協商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조성되는 남북간의 군사문제 직접대화와 평화분위기를 활용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로 연계시켜나간다.

이와 함께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中間措置를 모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정세를 안정화한다.

특히 북한이 대미 핵협상과정을 활용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 경우, 한·미와의 입장 충돌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북·미 불가침협정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關聯國의 立場을 조화시킬 수 있는 代案이 될 수 있다. 즉 美國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우회하는 한편,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中國은 군정위 철수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北韓은 대미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일단 유보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미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입장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을 근거로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문제를 시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고 있듯이 작전지휘권 이양사실과 평화협정 당사자성 간에는 논리적으로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서로 연계시키는 것도 법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북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주국방 확립차원에서 작전통제권을 완전 환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간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8. 南北平和協定 체결

한국의 당사자자격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시

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마땅히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대내외에 설득하기 위해 북한 주장을 반론하는 내용을 세계의 각종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政策을 개발하고 弘報한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한국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간의 긴밀한 共助體制를 유지하고 共同立場을 정립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평화협정 당사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휴전협정 시행기관을 대체하고, 둘째, 유엔을 통해 평화협정 당사자자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對北韓 經濟支援을 약속하고 반대급부로 북한이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호응해 오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 필요할 경우 대북한 경제지원 내용을 非公開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김일성의 遺訓次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려 할 것인 바,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할 경우, 북한

이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를 통하여 남북간의 현안을 一括妥結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간섭의 배제라는 당사자원칙의 취지를 살리면서, 북한 주장과의 타협 가능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평화보장력을 감안한 실효성, 법리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對應策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會談形式은 평화체제 전환(남북 평화협정)과 국제적 보장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한다. 첫째, 우선 分離接近方式에 입각하여 일차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어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 당사자해결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둘째, 만일 북한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에는 同時解決方式도 신중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적극 검토한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韓·美 相互防衛條約 제4조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派韓되었는 바,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다.

9. 韓半島 平和의 國際的 保障 方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으로는 ①美國에 의한 보장방안(2+1), ②美·中에 의한 보장방안(2+2), ③한반도 周邊4國에 의한 보장방안(2+4), ④한국전쟁 參戰16個國 및 中·러에 의한 보장방안, ⑤東北亞 安保協議體에 의한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에 의한 「2+1」 보장방안은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면서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長點을 안고 있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중국이 배제됨으로써 보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이 남북평화협정의 中立的 保障者로서 참여하게 될 경우,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보장자의 數가 적을수록 보장자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短點이 있다.

둘째, 美·中에 의한 「2+2」 보장방안은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므로 법리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보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2」 방안은 러시아

와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평화보장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셋째, 美·中·日·러에 의한 「2+4」 보장방안의 長點은 ①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당사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이 가능하며, ②보장국들 가운데 특정 쌍무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여타 국가가 한반도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분쟁발생시 분쟁의 조정·중재가 「2+2」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③동북아 역내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2+4」 방안은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개입을 인정·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통일과정에서의 外勢介入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과 주변4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등이 短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參戰16個國과 中·러에 의한 「2+16+2」 보장방안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의 당사국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 당사국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고, 한국전쟁 참전16개국과 중·러가 참여하는 해결방안이므로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보장조약의 당사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단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保障力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이 제외됨으로써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다섯째, 東北亞 安保協議體에 의한 보장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안전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기간내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이상과 같은 각 보장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國際的 保障方案은 휴전당사자라는 법적 지위, 남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실효성 있는 보장력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간 實體認定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러의 입장 등 한반도 주변현실을 감안하여, 「2+2」 방식을 추진한 후 이를 일·러가 추진(2+2+2)하는 형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통한 3차적 보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유엔안보리의 추진 내지 지지결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45
3. 일본	65
4. 러시아	76
IV.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基本方向	93
1. 기본원칙	93
2. 平和體制 轉換形態	97
가. 基本合意書 이행·실천방법	97
나. 傳統的 平和協定 체결방법	100
다. 바람직한 代案: 南北平和協定 체결	102
3. 政策推進基調 및 推進構圖	108
V.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政策推進方向 ...	113
1. 停戰體制 유지 모색	113
2. 不可侵 附屬合意書 실천	119
가. 南北 軍備統制	119
나. 韓·中, 北·美 交叉不可侵協定 체결	121
다. 作戰統制權 환수	124
3. 南北平和協定 체결	127
가. 當事者資格 확인	127
나. 南北頂上會談 추진	140
다. 융통성있는 會談形式 추진	141
라. 유엔軍司令部 해체 모색	143

VI. 韓半島 平和의 國際的 保障方案	148
1. 美國에 의한 보장방안 (2+1)	148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중동평화협정	148
나. 「2+1」 보장방안의 장단점	156
2. 美·中에 의한 보장방안(2+2)	157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157
나. 「2+2」 보장방안의 장단점	165
3. 美·中·日·러에 의한 보장방안(2+4)	166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로카르노 조약	166
나. 「2+4」 보장방안의 장단점	171
4. 參戰16個國과 中·러에 의한 보장 방안(2+16+2) ...	172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베트남 평화협정	172
나. 「2+16+2」 보장방안의 장단점	177
5. 東北亞 安保協議體에 의한 보장방안	178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유럽안보협력회의	178
나. 동북아안보협력회의에 의한 보장방안의 장단점 ...	185
6.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	186
VII. 結論	189

I. 序論

休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이란 남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南北平和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무시하고 1974년 3월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북한은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통해 미국·한국과의 3자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994년 4월 28일에는 외교부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1994년 9월 9일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나타나듯이 남북간에 이미 不可侵合意書가 채택되었으므로 북·미간의 平和協定만 체결되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4년 4월 대미 직접협상을 제의한 이래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군을 철수하고 5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기구를 임의로 설치하는 한편, 12월 25일에는 중국의 군정위 대표단을 소환시키고, 1995년 2월 24

일에는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를 철수시키는 등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休戰協定 死文化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휴전협정 사문화 전략은 휴전체제의 安定性을 위협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의 「남한배제·대미직접협상」戰略의 延長線上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과 이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체결하였는 바, 이 기본합의문은 정치·경제·안보분야에서의 북·미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기본합의문 이행에 맞춰 북·미관계가 관계정상화의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문제를 비롯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休戰協定 死文化戰略과 對美 直接協商戰略을 병행·추진함으로써 남한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만이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하는 등 對美 平和協定 締結戰略을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광복50주년 8.15 경축사를 통하여 평화체제 구축관련 3大原則을 천명하였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면서 南北當事者 解決原則이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가지 기본원칙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기합의사항 존중원칙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3대원칙의 천명은 북한 주장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南北平和協定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必要性·當爲性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 가능성 증대 등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북한의 전략 및 주변국가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平和體制 構築方案을 강구·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北韓의 主張을 연구한다. 먼저 북한 주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내용과 의도를 분석·검토한 후, 북한 주장의 논거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關聯國의 立場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基本方向을 강구·제시한다. 이를 위해 평화체제 전환의 기본원칙 및 전환형태·방법을 검토·분석하고, 전반적인 政策推進構圖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細部 政策推進方向을 강구·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國際的 保障方案을 연구한다. 각 보장유형별 사례분석과 장단점 비교·검토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가장 바람직한 보장방안을 도출한다.

II.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에 대한 北韓의 주장

1. 平和協定 체결 주장의 變遷過程

북한은 60년대 초반이래로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제기하여 왔는데, ①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 ②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③남북 불가침공동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 주장, ④포괄적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 등 대체로 4단계의 변화과정을 보여왔다.

가. 제1단계(1962~1974): 남북평화협정 체결

김일성은 196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남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남 선전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¹⁾ 이 당시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의 前提條件인 동시에 目標였다.

그후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간헐적이거나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70년대 초까지 계속 이어졌다.

1) 이 연설은 당시 내각 수상인 金日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題下에 행한 것이다. 동 연설에서 김일성은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북남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33;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II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167.

나. 제2단계(1974~1984): 북·미 평화협정 체결

197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은 기존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철회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여, 평화지향 이미지 부각을 위한 宣傳攻勢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최초로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하였으며,²⁾ 제30차 유엔총회(1975. 9)에 제출한 각서를 통해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實質的 當事者」는 북한과 미국이므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이 제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과거의 제안(先미군철수, 後평화협정 체결)과는 달리, 먼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에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先평화협정 체결, 後미군철수)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手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입장을 변경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던 것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근거로 미군이 철수

2) 북·미 평화협정의 內容으로 북한은 ①상호 불가침서약 및 직접 무력 충돌 위험 제거, ②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조선 경외로부터 일체의 무기·작전장비·군수물자 반입 금지), ③한국주둔 외국군으로부터 유엔군 모자 제거 및 완전 철수, ④외국군에 의한 조선의 군사기지화 및 작전기지화 방지 등을 들고 있다.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三集」(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858 참조.

3)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p. 12.

한 베트남의 경험 때문이었다. 즉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2만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971년 9월 25일 중·일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1972년 2월 21일 美·中 上海共同聲明이 발표되는 등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1973년 1월 미국과 월맹(북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서의 전쟁종료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일명 파리협정)을⁴⁾ 체결하였으며, 곧 이어 駐越美軍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월미군 철수에 고무된 북한은 1973년 6월 23일 「고려연방제」案을 발표하고,⁵⁾ 1974년 1월 18일자 박정희 대통령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 체결 제의를⁶⁾ 거부하는 동시에, 「대미 평화협정 체결」(1단계)→「미군철수」(2단계)→「남측정권 타도」(3단계)→「공산화 통일」(4단계)이라는 베트남 공산화과정의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4) 법적·형식적으로 파리협정은 미국과 월맹(북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 이외에도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과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콩)도 당사자로 되어 있다. 파리협정의 全文은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74*, Vol. 935, No. 13295 (1977), pp. 6~17 참조.

5) 諸成鎬,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1-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10~11 참조.

6)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에 관해서는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 (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457~462 참조.

다. 제3단계(1984~1991): 남북불가침공동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

제3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90년대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즉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서울 당국과 미합중국 정부 및 국회에 보내는 편지」(소위 3자회담 제의 서한)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북한)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강조하는 등 「남북불가침공동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을 제의하였다.⁷⁾

이 제안에서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手段으로 제시되어, 북한의 「先평화협정 체결, 後주한미군 철수」 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이 제안을 계기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對美 宣傳攻勢 및 의회 차원의 人民外交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 255; 통일원,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제1권」(서울: 통일원, 1991), p. 319. 1984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 許鎡이 행한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라는 보고에서도 남북 불가침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 제의하였다.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Ⅳ집」(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581 참조.

라. 제4단계(1991~현재): 포괄적 평화보장체계 수립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유엔과 북한간 非正常的 關係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 청산의 일환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괄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⁸⁾ 특히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과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왕에 주장해 왔던 南北 不可侵宣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⁹⁾

그후 북한은 1993년 10월 5일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의 제 4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¹⁰⁾ 1993년 12월 24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방북 환영연회에서 김영남 외교부장의 만찬사,¹¹⁾ 1994년 6월 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김영남 외교부장의 편지¹²⁾ 등을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였다.

8) 1991년 9월 18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기자회견과 10월 2일 연행목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 참조.

9) 예컨대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19일자 보도는 “북과 남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 만큼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0)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3. 10), p. 54.

11)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3. 12), pp. 73~74 참조.

12)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 6), pp. 67~68, 157~160 참조.

한편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 고위급회담과 실무접촉이 1993년 6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뉴욕과 제네바에서 개최되자,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로 삼으려는 의사를 본격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하였다.¹³⁾

그후 북한은 1994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이 이미 「빈종이장」이 되었으므로 북·미간 敵對關係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미국에 제의하였다.¹⁴⁾ 특히 1995년 6월 29일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규정한 1975년 11월 제30차 유엔총회 결의 채택 20주년에 즈음하여 北韓外交部 備忘錄이 발표되었는데, 북한

13) 예컨대 북한은 1993년 7월 14~1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 12일 북·미 회담 북한측 대표인 姜錫柱 외교부 제1부부장은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 문제의 「일괄타결」(a package deal)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수용하는 등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해 북·미 수교, 국가승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적대정책 해소를 요구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연례정세분석보고서 94-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8, 59~60 참조.

14)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1994. 4), pp. 116~117 참조.

은 이를 통해 미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 정전체계가 “복구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교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이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먼저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한편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事前 整地作業 및 對南 政治·心理戰 차원에서 양대 정전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정전협정을 사문화·무실화시키고 있다. 즉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북한측 군사정전위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¹⁶⁾ 1994년 5월 24일 군사정전위를 대신할 새로운 협상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는¹⁷⁾ 동시에, 1994년 12월 15일에는 군사정전

15)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체계가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비망록), 「로동신문」, 1995년 6월 30일.

16) 북한은 4월 28일 개최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접촉에서 軍停委會에서의 일방적 철수 방침을 통보하였다. 즉 군정위로부터 위원, 비서장, 부비서장, 기타 참모장교 등 북한측 요원의 전원 철수 및 유엔측 군정위에 대한 불인정 입장을 통보하면서, 군정위 대체 및 항구적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미군측과의 판문점 직접접촉을 제의하였다. 또한 4월 29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북측 지역에 철모와 개인화기로 무장한 4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兵力의 超過投入과 武力示威를 감행하였고, 4월 30일에는 북한 공군기들이 휴전선 근접지역까지 남하하는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軍事的 緊張을 조성하였다. 또한 5월 6일 군정위 비서장들간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측 대표들은 군정위 표시인 黃色腕章을 착용하지 않고 「군사정전위원회」라는 用語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1994. 5), pp. 47, 82;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1호(1994), p. 110.

위원회로부터 중국군 대표마저 완전 철수시키는¹⁸⁾ 등 한국을 배제한 채 군사정전위원회의 테두리 밖에서 미군과의 군사접촉을 계속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3년 4월 중감위 체코 대표단의 철수에 이어 1995년 2월 28일 폴란드 대표마저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휴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사실상 마비되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을 무단침범하는 등 非武裝地帶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5월 3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감위 사무실 폐쇄, 유엔군측 군정위 및 중감위 요원 등의 공동경비구역 출입 금지 등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 「平和保障體系」의 내용

가. 개념

북한은 최근 미국에 대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협정 체결만을 제의하던 과거의 제의와는 달리 새로운 概念에서 출발하고 있다.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정전협정

17)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 5), pp. 82~83 참조.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개설 주체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이다.

18)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 12), pp. 110~111 참조.

은 평화협정, 정전기구는 평화보장체계로 각각 대체하자”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보장체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전기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기구」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말사전」에서도 體系를 “개개의 것을 그 구성부분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것으로 통일하는 그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평화보장체계」를 단순히 기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⁹⁾

이런 점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북한식 평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복무하는 機構와 이를 뒷받침하는 法制度 또는 體制에 대한 총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 북한은

19) 이와 관련,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의 辭典的 定義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조선말사전」은 1981년판부터 ‘평화협정’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평화협정은 “나라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관계와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225.

둘째,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나라들이나 또는 지역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관계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으로 되어 있다.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802. 한편 같은 사전에서 ‘평화조약’은 그 적용범위를 「나라들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백과전서」에 의하면, 평화협정은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한편 북한이 사용하는 평화협정의 유사용어로는 평화조약과 강화조약이 있는데, 그 정의에 관해서는 「조선말대사전」, pp. 109~110, 802;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1;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5 참조.

이미 1990년 12월 11~14일간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연형묵 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①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② 북·미 평화협정 체결, ③남북한 군비축소, ④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강령」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²⁰⁾ 「평화보장체계」는 「평화강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화강령」에 북한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골격이 담겨 있고, 북한의 평화구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로 남북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①남북 불가침 실천(불가침선언 채택 자체는 아님), ②북·미 평화협정 체결, ③남북한 군비축소,

20)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평화가 깃들어야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할 수 있으며, 겨레를 전쟁의 재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平和綱領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우선적 지위에 놓고 해결하자는 것이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수시키자는 것입니다.”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52호 (1991), pp. 40~41.

「평화강령」 4개항 가운데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수단)과 남북 군비축소(목표)는 對南 次元이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수단)과 주한미군 철수(목표)는 對美 次元으로서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평화강령」은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과 대미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2개의 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1984년 3차회담 제의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대남차원에서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이라는 수단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은 남북군축 실현을 대남전략의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평가된다.

④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機構 및 體制·法律制度(각종 협정 포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해 북한이 설치한 대표적인 기구로 볼 수 있다.²¹⁾

나. 특징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전술하였듯이 이미 70년대초 이래로 지난 30여년 이상 동안 주장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몇가지 점에서 과거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첫째, 과거에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만을 제의하였으나,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평화이미지 또는 평화지향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장차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열릴 경우 協商議題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1987년 7월 23일자 段階的 武力減縮提案과 1988년 11월 7일자 包括的 平和方案을 집대성하여 북한이 1990년 5월 3일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 의하면, 군축을 위한 실천조치는 ① 남북 신뢰조성, ②남북 무력감축, ③외국무력 철수, ④군축과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제안에는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이 동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3~4년내 무력의 단계적 감축, 평화협정 체결, 남북간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비무장지대내 중립국감시군 배치 등은 북한식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동신문」, 1990년 6월 2일.

둘째, 과거의 경우는 대체로 一過性的의 宣傳的·宣言的 次元의 주장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북한 제의의 특징은 단순히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및 대남 정치·심리전 차원에서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들을 사문화·무실화시키려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셋째, 과거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미간에 대화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허한 宣傳攻勢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핵문제 해결(또는 대북 경수로지원 문제)과 연계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協商手段(또는 유인책)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를 명시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대사급 외교관계까지 격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제의·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²²⁾

다. 목표 및 의도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배경과 意圖는 ①체제유지전략, ②대남전략, ③대미 협상전략의 3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22) 白珍鉉,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 問題點과 對策,” 「主要國際問題分析」, 1994. 10. 19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p. 6 참조.

(1) 體制維持戰略

현재 북한은 심한 외교적 고립, 이데올로기적 위협, 경제난, 권력승계 등 總體的 危機狀況에 처해 있으며,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는 안전판으로 고안된 것이 핵무기 개발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 및 관계개선이다.

특히 북한은 유일 초대강국인 美國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체제의 존립과 안정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도인 동시에, 최대한의 經濟實利를 얻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미 평화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상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한 무력불사용 및 불위협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²³⁾ 즉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 對南戰略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기존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聯邦制 統一戰略인데, 북한은 駐韓美軍과 國家保安法의 존재가 연방제 통일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으

23) 이와 관련, 「로동신문」, 1995년 5월 18일자 논평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여기에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最大·最終目標은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둘째, 주한미군의 대량 감축 또는 완전철수, 셋째, 미국의 對韓 핵우산 철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聯邦制 統一의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장기적·궁극적 목표 이외에도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할 경우, 북한은 短期的으로도 對南戰略上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면서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이 문제의 쟁점화를 통해 한·미관계를 이간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韓·美 同盟關係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평화협정 공세를 통해 틴스피리트훈련 영구 중지, 남북간 군축논의 개시, 주한미군의 조기 감축 유도,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국 국방력의 상대적 약화를 통한 對南 軍事優位 확보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남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나

아가 통일전선전술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3) 北·美間 協商戰略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북·미간 협상 전략 차원에서 ①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 이간 및 국제공조체제 와해 유도, ②대미 협상력 제고를 통해 당면한 경수로지원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 및 최대한의 실리 확보, ③「한반도문제의 북·미간 문제화」, 즉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향후의 북·미 고위급회담(외교적 수준의 고위급 내지 준 고위급 회담 또는 고위군사당국자간 회담)에서 협상의제화하는 등의 目標를 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특히 단기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경수로 지원협상에서의 協商力 제고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미가 「한국형」 경수로 제공 입장을 고수하자, 1995년 4월 중순부터 경수로협상을 포함한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²⁴⁾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경수로 공급문제를 연계시키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

24) 북한은 한편으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북·미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다. 後者의 입장은 「로동신문」, 1995년 4월 13일자 논평; 1995년 4월 19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5년 4월 20일; 「로동신문」, 1995년 4월 29일; 「로동신문」, 1995년 4월 13일; 「조선중앙방송」 1995년 5월 30일자 보도 참조.

미 협상에서 유리한 協商高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와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계속 이와 같은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라. 추진전략 및 전술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하에 포괄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한다는 북한의 입장은 결국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오직 미국과 해결한다는 南韓排除戰略으로 집약되며,²⁵⁾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戰術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停戰機構를 조직적으로 無力化시키고 軍事分界線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전기구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미에 의한 정전기구의 復元 試圖가 무위로 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정전협정체제 파괴의 責任을 미국에 전가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25) 南韓排除戰略은 「미국, 남한 당국, 남한 주민」 등 3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전략을 구사하는 3角 構圖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과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을 종합할 때, 북한의 對南戰略 目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미국과 직접 해결함으로써 對南 優位와 正統性을 확보하고, ②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남한내 안보태세를 약화시킴으로써 남조선 해방의 기회를 도모하면서, ③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北韓의 당국과 南韓의 비당국간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다.²⁶⁾

셋째, 미국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정전기구 무력화 및 정전협정 사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옹당한 조치 또는 추가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²⁷⁾

넷째, 미국이 평화협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소위 中間措置라는 것을 고안하고,²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통해 미국과의 高位軍事會談 내지 將星級 接觸을 시도하는 戰術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동 문제와 北·美 基本合意文 이행(특히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을 연계

26) 1995년 2월 24일 및 28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5년 3월 3일자 논평; 「민주조선」, 1995년 3월 5일자 논평 참조.

27) 1995년 2월 24일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에 관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1995년 4월 7일자 폴란드의 북한 외교관 감축 조치에 관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1995년 4월 19일자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계획에 관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대미 비난담화; 1995년 5월 3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1995년 5월 12일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조치강행과 관련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5년 5월 14일자 논평 참조.

28) 북한은 1994년 12월 방북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 방문단에게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의 中間段階措置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東亞日報」, 1995년 1월 26일. 이 중간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北·美 不可侵協定 체결,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북한측 대표와 미군 장성급 대표간의 북·미간 고위 군사 접촉채널 개설 및 정례화(군사정전위원회 틀밖의 변칙적 대화), 북·미간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추론된다.

또는 전제조건화하려고 하고 있다.

3.北韓主張의 論據

가. 平和協定 체결의 必要性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만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자체도 有名無實化되고 있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상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내 긴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정전협정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종이장'이 되고 군사정전위는 사실상 주인없는 기구로 되는 등 현 정전체계가 "복구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교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무력화 내지 기능 상실을 근거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정전기구는 「평화보장체계」로 각각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²⁹⁾ 주장하고 있는 바, 북·미간의 적대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29)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 핵문제와 대북 경수로지원문제 등 평화협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평화협정과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나. 停戰機構 유명무실화의 논리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내지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事前整地作業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군사정전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정전협정의 핵심적 요소인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기능 상실의 責任이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이 패트리엇 신형 미사일 등 작전물자를 반입하는 등 정전협정 제13항 2목 및 제61항을 위반하였으며, 아무런 실권도 없는 남한 장성을 군정위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협정 이행의 유일한 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체약일방인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거기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조건에서 ... 대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³⁰⁾ 따라서 북한은 ‘부득이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조치’로서 군정위로부터 북한측 인원과 중국측 대표를 철수시키고 중립국감독위로부터 체코와

30)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995년 6월 29일자 북한 외교부 비망록; 길재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의 정당한 조치,” 『근로자』, 제7호 (1981), p. 56 참조.

폴란드 대표를 강제 철수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³¹⁾

다. 實質的 當事者論

북한은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交戰當事者인 동시에 정전협정 署名當事者이므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實質的 當事者論에 입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무력실태(주한미군의 존재와 작전지휘권)를 보아서도 남한은 미제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한국전쟁을 미제국주의와 싸운 祖國解放戰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국전쟁의 性格과 관련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전쟁 도발에 대해 正統政府인 평양정권이 미제 식민지인 남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自衛의 戰爭”으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해방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유엔군의 우산아래 다른 나라 군대들을 규합하여 한반도문제에 부당하게 介入(침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한국전쟁이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²⁾

31) 중립국감독위의 기능 마비에 관해서는 중감위 폴란드대표 철수에 즈음한 「로동신문」의 논평, 강철수, “미국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5년 3월 3일 참조.

32)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 “조국

둘째, 북한은 이른바 「실질적 당사자론」에 입각하여, 정전협정의 署名者는 유엔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인데, 중국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하였고, 대부분의 유엔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이므로,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의 實質的 當事者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셋째, 북한은 현재에도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지속되고 있는 등 남한이 미제의 괴뢰로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 무력에 대해 통수권을 거머쥐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⁴⁾

넷째, 북한은 더욱이 남북한간에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은 기합의한 문서에 따라 불가침을 성실하게 이행·실천하기만 하면 되고, 구태여 남북한이 별도의 平和協定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방전쟁승리를 위한 당의 투쟁, 당대렬의 확대와 당의 조직사상적 강화 (1950.6~1953.7),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266~319 참조.

33)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Ⅲ집」, p. 858 참조.

34) 이와 관련,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미국이다.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인 무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도 없다.” 강철수, “미국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III.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에 대한 關聯國 立場

1. 미국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여 전쟁을 치른 바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하여 북한의 전쟁 재발 기도를 억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敵對感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및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중대한 불안요인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증폭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응, 직접 참전하여 남한의 자유를 수호한 바 있으므로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介入과 擴大(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국가전략을 통하여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세계전략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直接對話를 진행시켰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유지해 온 均衡者役割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략이 순조로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지역의 平和와 安定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냉전이후시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 및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7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신태평양 공동체구상」을 밝힌 바 있다.¹⁾ 그 내용은 첫째, 미국은 이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안보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美軍의 주둔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기초하에서 미국은 安保面에서 네가지 優先課題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군의 지속적인 역내 주둔이다. 둘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이 다. 셋째, 공동의 안보위협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새로운 地域安保對話의 모색이다. 넷째, 지역전체에 대하여 보다 개방된 사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이러한 우선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첫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 역내국가들과 유지하고 있는 양자적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클린턴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 및 중동지역에 대한 판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U. S. President Bill Clinton'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2)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내 주둔 미군을 10만명선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또한 북한에 대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地域安保對話의 필요성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소련 위협의 소멸과 함께 등장한 종족분쟁, 지역불안, 난민문제 및 마약과 불법무기 등 냉전이후시대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지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태지역의 地域協力機構는 ‘다양한 위협과 기회’(multiple threats and opportunities)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multiple new arrangements)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위협과 기회’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조, 유엔의 평화유지군(PKO) 활동 및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분쟁에 대한 신뢰구축문제 등이다. 넷째,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의 일부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의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民主主義의 확산이 국민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국제전략 중 한반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는 미국이 국지전 발생에 대비하여 수립한 「두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Win-Win Strategy)이다. 즉 미국은 1994년 7월 「개입과 확대의 國家安保戰略 報告書」에서 해외에서의 군사력 유지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결의를 과시하고 유사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Win-Win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³⁾ 따라서 미국은 여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

에라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를 상정하여 충분한 억지력 및 개입능력을 비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세계 안보전략은 냉전이후시대 소련의 위협이 소멸된 상황에서 고안된 것으로서 다소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며, 北韓 核問題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북한 핵문제로 비롯된 1994년의 한반도 불안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국민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간의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고조된 관심은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미국의 韓半島政策은 ①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 지원, ②미국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자유롭고 독립된 민주정부 수립, ③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한국을 미국의 방위체제에 연결, ④한반도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될 때까지 미국은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분계선(DMZ)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 인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⁴⁾

3)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15, Part 2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1620~1624. 이체진,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동북아 안보정세와 통일전망」 (1993. 11. 19~20) 참조.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南北韓間 直接對話를 통하여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북한과 합의한 기본합의문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한 적대관계를 어떠한 형태로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對北韓 關係改善에 대한 立場과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심층적 분석이 요망된다.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 호응하는 동시에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의한 對北韓 宥和措置에⁵⁾ 따라 1988년 12월부터 북한과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33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①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②IAEA와의 안전협정 체결, ③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반환, ④테러행위 중지, ⑤인권상황 개선, ⑥미사일 및 관련기술 수출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

5) 미국은 미 외교관이 북한인사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시민의 친지 방문 및 학술·문화행사 참가를 위한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사안별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한 수출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Daniel Russel, "U. S.-North Korean Relations," in *Current Issues in Korean-U. S. Relations: Korean-American Dialogue*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93), p. 49; 吉炆宇 외,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61 참조.

국에게 ①주한미군 철수, ②남북한의 상호 감군, ③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④팀스피리트훈련 중지, ⑤북·미간 직접 대화 및 관계개선, ⑥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남북한 쌍방이 원한다면 南北對話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식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⁶⁾

이후 미국은 1991년에 한반도에서 核武器를 철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양국은 1992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의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간에 1992년 1월 첫번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2년 1월에 IAEA와 安全協定을 체결하였다. IAEA는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일반사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IAEA는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양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IAEA는 1993년 2월에 북한에 대하여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NPT 脫退에 대응하여 유엔에서 결의한 회원국에 대한 핵문제 해결 촉진 권고⁷⁾에 근거하여 1993년 6월

6) 吉炬宇, “北·美關係와 韓國: 過去, 現在와 未來,” 「南北韓關係와 美國」,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4-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1 참조.

7) 유엔 안보리는 제825호 결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음과

2~11일 뉴욕에서 북·미간 제1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제1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은 북한의 NPT 탈퇴 유보선언을 유도하고 NPT 체제 및 IAEA의 安全措置가 북한에 계속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IAEA 사찰 재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제1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핵확산방지 목적에 부합되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지지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NPT로부터의 탈퇴 효력(the effectuation of withdrawal)을 일방적으로 정지(suspend)시키기로 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첫째,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둘째,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 원칙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미국은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 ①북한에 대해 1993년 3월 12일자 서한에 담긴 NPT 탈퇴 선언을 재고하고 NPT에 대한 이행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②또한 북한에 대해 조약상 핵무기 확산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과 IAEA 이사회의 1993년 2월 25일자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③IAEA 사무총장에 대해 IAEA 이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④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이 이 결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한다. ⑤안보리는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NPT 잔류를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제2단계 회담에서는 IAEA 사찰문제 해결에 주력하였다.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이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잔류가 기정사실화되었는 바, 동 회담의 共同報道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측은 제1차 북·미 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관련된 핵시설들을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방도를 북한과 함께 모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셋째, 양측은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 공정한 적용이 NPT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넷째, 북한은 안전조치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 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섯째,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南北會談을 시작할 용의를 재확인하였다. 여섯째, 핵문제 관련 현안 및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내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⁸⁾

8) 북한 핵문제 관련 북·미간 협상 및 북한의 의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北韓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민족통일연구원 연례정세보고서 94-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5, 1994); Larry A. Niksch, *CRS Issue Brief North Korea's Nuclear*

미국은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하여 核開發 凍結意思를 밝힘에 따라, 7월 8일 제네바에서 북·미 3단계 회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7월 8일 사망함에 따라 북·미 3단계 회담은 하루만에 연기되었으며, 그후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8월 5~13일 개최된 3단계 1차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북한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硬水爐 發電所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으로 2백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북한에 제공하며 그동안 북한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代替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대가로 5만kw, 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IAEA의 감시밀에 두기로 하였다.

둘째, 북한과 미국은 정치·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에 外交代表部를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된 용의를 표명하

였다.

넷째, 북한은 NPT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安全協定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3단계 2차회담을 1994년 9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하여 10월 21일 基本合意文에 합의하였다.

미국이 북한과 합의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①경수로 지원 조항, ②관계개선 조항, ③한반도 비핵화 조항, ④NPT체제 유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10월 20일 김정일에 대한 친서를 통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북한에 대하여 약속하였다.

첫째, 기본합의문 중 硬水爐 支援條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2,000MW에 상당하는 경수로를 북한이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6개월안에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건설 중단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첫번째 경수로 완성시까지 代替에너지를 공급한다.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重油로 한다.

대체에너지의 공급은 3개월안에 개시하며 연간 50만톤까지 공급하기로 한다.9)

- 9) 미국과 북한은 1995년 5월 19일부터 6월 12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준고위급회담에서 硬水爐 供給契約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미국은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관한 1994년 10월 20일자 미대통령의 보장서한이 계속 유효함을 재확인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미국 주도하에 북·미 基本合意文에 입각해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사업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한다. 합의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필요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인이 KEDO 대표단 및 작업반의 대표가 된다. ②경수로 사업은 각각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약 1천 MW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된다. 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의 노형은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한다. ③북한 정부를 대표한 대외경제위원회와 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턴키베이스로 제공하기 위한 공급협정을 가능한한 최단시일내에 체결한다. 이 발표문에 기초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관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KEDO와 회동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의 건설과 운전애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敷地調査를 실시한다. 부지조사와 부지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한다. 경수로 사업의 전반적 이행에 관해 KEDO의 감리업무를 보조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미국기업이 담당하며, KEDO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선정한다. 북한기업은 경수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행에 관련된 계약에 참여한다. ④경수로 사업에 추가해 양측은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의 전문가들은 기본합의문에 따른 重油의 단계적 공급을 위한 일정과 제반 협력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6월중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에서 만난다. KEDO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유의 일차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즉시 취한다. 1995년 1월 20일자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북·미간 회담기록은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진다. 이와 관련, 동 이행을 위해 미국 전문가들이 6월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은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접수되는 즉시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지하며, 궁극적으로는 흑연감속로와 부속시설들을 解體한다. 북한은 흑연감속로 가동을 1개월안에 동결한다. 북한은 IAEA가 핵동결을 감시하는데 협조한다. 흑연감속로의 해체는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에 완결한다. 미국과 북한은 5MW 실험용원자로에서 추출된 폐연료봉의 안전한 저장방법을 강구하며, 경수로 건설기간 중에 폐연료봉을 폐기하도록 한다.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문제 관련 전문가 회담 및 폐연료봉의 처리와 폐기 관련 전문가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

둘째, 關係改善 關聯條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문 서명후 3개월안에 양측은 금융거래 및 통신을 포함한 투자와 무역상의 장벽을 낮추기로 한다.¹⁰⁾ 양측은 영사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여 상대방의 수도에 連絡事務所를 개설한다.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

10) 미국은 이에 따라 1995년 1월 20일 다음과 같은 대북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①通信 및 情報: 북·미간 전화를 포함한 통신 관련 거래, 개인적 여행 관련한 신용카드의 사용 및 언론사의 사무소 개설을 허가한다. ②金融去來: 북한의 미국계 은행 서비스 사용을 허가하고 미국내 북한의 사유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한다. ③기타 貿易關係: 미 철강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을 허가한다. ④기타 基本合意文 이행관련 조치: 워싱턴과 평양의 북·미 連絡事務所 설치 관련 북·미간 교섭을 허가하고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및 폐연료 처리 관련 미국 기업의 참여를 고려한다.

이 진전될 경우, 미국과 북한은 양자관계를 大使級까지 격상한다.

셋째, 韓半島 非核化條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협조한다. 미국은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공식적으로 확약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본 합의문이 남북대화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넷째, NPT體制 維持條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NPT체제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NPT체제의 일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안전협정의 이행을 수락한다. 경수로사업의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IAEA의 동결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에 대한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지원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 즉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북한은 IAEA와의 안전협정에 근거하여 북한 내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핵시설 관련 초기보고서에 대한 정확도 및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완전한 사찰이 이행되도록 한다.

기본합의문은 17개월간의 미국과 북한간 회담을 거쳐 완성되었으나, 동 합의문은 非公開 附屬條項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가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라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지원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다.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바, 북한이 기본합의문 및 관계개선의 고려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간 관계정상화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미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직접접촉 및 관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북·미간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韓半島 平和와 관련한 문제 중 미국이 관련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美國의 立場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南北對話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北韓 核開發의 凍結이다. 북한은 기본합의문에 따라 핵개발을 동결하였으나, 폐연료봉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회담을 진행중이다. 또한 북한 핵개발의 동결이 확실해지는 조치인 흑연감속로 및 부속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개발의 동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대북한 협상 및 압

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의 대북한 관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北韓 核問題의 透明性 확보문제이다.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 확보문제는 다시 IAEA의 안전협정 이행문제와 남북한 상호사찰문제로 나뉘어진다. IAEA에 의한 대북 핵사찰은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기본계약이 체결되는 시점(기본합의문 서명후 6개월안)에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IAEA의 완전한 사찰은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약 4~5년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과거문제에 대한 완전한 규명은 1999년 또는 2000년경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의 非核化共同宣言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재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남북 상호사찰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며, 남북 상호사찰은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IAEA사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南北 相互査察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간 협상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南北對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즉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문제는 기본합의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과 북한간 北京接觸 및 고위급회담에서도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

안이다. 따라서 남북대화 재개문제는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문제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미사일 및 關聯技術 輸出禁止 문제이다. 미국은 북한이 중동지역 국가들인 이란, 시리아 및 리비아에 미사일을 수출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수출이 미사일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의 강화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¹¹⁾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MTCR 가입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의 테러行爲 中止 및 人權狀況의 개선문제이다. 미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을 테러국가 및 인권침해국가로 분류하여, 대북한 경제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하여는 북한이 국제적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대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할 것이며,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立場을 취할 것으로 분석된다.

1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 Military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Washington, D. C.: The Library of Congress, September 27, 1994) 참조.

첫째,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한 基本立場 問題이다. 미국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42년간 지속되어 온 停戰協定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정전협정과 체제는 적절한 대체협정이 남북한간에 모색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남한과 북한만이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南北對話에 의해서만 모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²⁾

둘째, 停戰協定의 代替問題이다. 미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의 전환문제는 남한과 북한간에 논의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에 발생한 미군 헬기 사건을 리차드슨 하원의원,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와 북한간의 정치회담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동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軍事當局者間 적절한 접촉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¹³⁾ 이와 같은 북·미간 직접접촉 사례는 미국과 북

12)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1995), p. 10 참조.

13)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제209호 (1994. 12), pp. 25~31; 한용섭 교수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만약 앞으로 정전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정치인의 방북과 북·미 고위급회담의 채널가동 등을 통한 부정기적 대화채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韓庸燮,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5-01 (1995. 6. 21), p. 10 참조.

한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이후의 북·미간 대화의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가능성은 없으나, 주한미군이 관여된 군사문제가 발발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 또 다시 직접 군사 및 정치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반도 평화의 유지와 관련한 문제로서 韓·美 同盟關係의 문제이다. 미국은 한·미 안보관계의 유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유지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남한이 원하지 않는 한 駐韓美軍의 철수 및 한·미 동맹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미국내의 일부 여론이 주한미군 지속 주둔에 대하여 문제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미 연합사의 作戰統制權 문제와 관련, 미국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하였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유엔軍司令部 해체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엔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전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對北韓 不可侵 約束問題이다. 미국은 1994년

10월의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文書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핵선제불사용 문제를 연계하여 미국과 협상할 경우 북한은 핵사용 불사용 약속 이상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미국이 대북한 包容政策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남북한 軍備縮小問題이다. 미국은 북한이 휴전선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병력과 무기에 대하여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하여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킬 것을 북한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또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의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가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반도의 武力對峙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북한측에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을 논의 및 이행하기 위한 군비통제협상에서 미국측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國際的 保障問題이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을

14) Testimony of Robert L. Gallucci, Ambassador at Large on the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cember 1, 1994.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태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과 협력하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동북아지역에서도 미국 국무부 후원아래 民·官이 참여하는 형식(Track Two)의 東北亞協力會議을 개최하였다.¹⁵⁾ 또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소멸한 뒤에도 한반도에 美軍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된다면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南北平和協定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중국이 남북평화협정의 이행·실천을 보장하는 「2+2」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⁶⁾

2. 중국

중국은 1953년에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의 직접 체결당사국이며, 현재도 북한과 軍事同盟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등 한반도문제에 대해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鄧小平 등 혁명 1세대 지도부 교체 이후의 과도기에 대내 정치안정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5) 金圭倫, 全東震, 「東北亞 多者間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3-0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6) 레이니 주한 미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이 원한다면 남북평화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中央日報」, 1995. 8. 24.

주변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먼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점검해 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 平和體制 構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추론·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동북아질서가 유럽이나 중동 등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냉전잔재 지속, 영토문제 미해결, 강대국간 영향력 확대 경쟁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緊張과 葛藤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강대국간 대규모 전쟁이 발발 가능성은 감소되고 있지만, 地域紛爭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⁷⁾

중국은 구소련의 붕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과거 미·소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 무력대결 가능성이 감소되고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은 1960년대 이래 중국에게 가장 커다란 安保威脅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 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러시아의 대외 영향력 감소는 중국의 安保負擔을 경감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 감소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내외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國益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0년대 이래 과거 敵對關係에 있었던 러시

17)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5. 3. 6; 萬樹玉, “國際形勢座談會紀要,” 「現代國際關係」, 1993年 第1期 (1993. 1), p. 3.

아, 인도, 한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의 善隣關係 구축을 계기로 자국의 안보환경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⁸⁾ 중국은 러시아와 동부국경선 문제(1991)와 서부국경선 문제(1994)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와 信賴關係를 회복하게 되었고, 인도, 베트남, 한국 등 과거 전쟁을 겪었던 주변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중국의 안보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대내 改革·開放政策 추진과 대외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구소련 붕괴후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간 역학관계 변화와 지역내 냉전의식 잔존 그리고 한반도문제 등이 동북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⁹⁾ 중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동북아질서가 기본적으로 미·중·일 3각체제로 변화되고 있으나, 미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唯一 霸權的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시대에 비해 동북아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미국이 자신을 最大 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사회주의체제 변화 유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18) 楊成緒, “和平與發展: 當代兩大主題,” 「人民日報」, 1994. 3. 28; 「文匯報」(香港), 1994. 3. 28.

19) 楊成緒, “對東北亞安全問題的分析,” 「國際問題研究」, 1994年 第3期 (1994. 7), pp. 19~20.

은 미국이 중국경제와 군사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人權問題와 知的 所有權問題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최근들어 李登輝 대만 총통의 訪美를 허용하고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한 사실들을 모두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⁰⁾

또한 중국은 일본의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 움직임이 동북아질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경로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지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시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 국회가 전후 50년을 맞아 「不戰決議案」을 통과시켰으나 결의안이 과거 중국침략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일본이 유사시 중국에 위협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²¹⁾ 아울러 중국은 향후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공동으로 동북아질서를 지배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정전상태 지속, 북한의 국제고립 등

20) “我外交部發表聲明提出強烈抗議,” 「人民日報」, 1995. 5. 23; 夏沖, “美越和解會否針對別國,” 「文匯報」, (香港), 1995. 7. 14.

21) 「中國時報」(臺北), 1995. 6. 17.

한반도문제도 중국의 안보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정책이 미국, 일본, 한국 등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을 미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유발하는 등 동북아질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經濟難과 國際孤立 상태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내부 혼란 및 난민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수교한 반면 북한은 미·일과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강대국에 대한 남북한의 非對稱的 관계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²²⁾

이와 같은 인식과 판단하에,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의 位相을 유지·확대하는데 동북아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현재 對內 經濟發展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기조는 중국이 「평화」

22)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 536.

와 「발전」을 1990년대 兩大 國家目標로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백히 표출되고 있다.²³⁾ 만약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 일, 러 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2000년대까지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목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모든 국력을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대내외 환경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이 침해하게 개재되어 있는 동북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善隣友好關係 증진을 주요 대외정책 기조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안보에 불이익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91년 이래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일본과 상호 訪問外交를 통하여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과거 갈등관계에 있던 인도와 베트남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1992년 8월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도 주변국과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기조하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핵무기 개발과 폐쇄정책 등 동북아질서 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非理性的 정책자세에 대해서도 중국은 과거의 대북 지지입장을 수정하여 북한의 자세변

23) 楊成緒, “和平與發展: 當代兩大主題.”

화를 촉구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善隣關係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완화·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人權問題, 知的 財産權問題, 武器輸出問題 및 대만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사사건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李道豫 주미 대사를 소환하고 고위 지도자 교류를 철회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 報復措置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와 남북한 등 주변국에 대해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²⁴⁾

아울러 중국은 동북아 지역강대국으로서 응분의 역할을 유지·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경제력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홍콩과 臺灣에 대한 主權을 회복하고 동북아 등 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중국은 지난 16년 동안의 경제발전으로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자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위협감소로 인하여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 이와 관련,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고위 지도자를 파견하여 한국과의 정치·안보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과도 기존의 긴밀한 협력관계 복원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또한 중국은 李鵬 총리의 러시아 방문(1995. 6. 25~28)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안보정책도 동북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短期的 次元의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구는 중국이 中長期的 次元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동북아 질서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²⁵⁾ 한반도에는 약 4만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해 있고 남북한이 100만이 넘는 軍事力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간 냉전종식 이후에도 긴장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전략상 중요한 東北三省과 접경하고 있어서 과거 일본이 중국 침공을 위한 경로로 활용해 왔으며, 1950년 한국전 발발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지역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상대방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중국과 북한 양국은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한국전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地政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입각,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25) 譚漢, “1993年軍控與裁軍形勢,” 「國際問題研究」, 1994年 第2期 (1994. 4), p. 29.

한반도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를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서방국의 제재를 반대하여 왔다는 점, 북한에 대해 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한반도 통일 보다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중국이 지도부 교체라는 정치적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환경의 안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국면이 초래될 경우 한반도문제와 관련 指導部內 摩擦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바라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가 지닌 地政學的 중요성으로 인하여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東北三省 지역이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우호적인 정부에 의해서 지배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될 경우 중국의 안보유지 및 경제발전에 심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정치·안보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1950년 당시 중국이 대내 정치·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韓國戰爭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38선을 넘어 군사 공격을 감행하였던데 있었던 것처럼,²⁶⁾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死

활이 걸린 지역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해 지원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들어 관계증진 정책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데에는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정책변화에 크게 고무받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러시아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지 약 2년후 중국이 한국과 國交를 정상화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위지도자 교환 방문 등을 통해 한국과 정치·안보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일본과의 영향력 확대 경쟁에서 主導權을 장악하려는 점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접근정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平和體制 전환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인 정책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 威脅要因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平和體制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

26) 「周恩來選集」(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2.

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시까지의 停戰體制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⁷⁾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북한이 의도하는 평화체제가 당분간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緊張과 葛藤을 조정하기 위한 채널로서 현 정전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간 緊張局面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남북한간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해 온 정전체제가 와해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4년 9월 북한의 요구로 판문점 주재 중국 정전위 대표단 소환(調回)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한반도 정전협정은 유효하며 관련국들 모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중국군의 정전위 철수가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²⁸⁾ 중국이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의 緊張狀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27)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유지되기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1995년 9월 26일 공노명 외무장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東亞日報」, 1995. 9. 27.

28) 「文匯報」(香港), 1994. 9. 2.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⁹⁾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當事者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지 않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과 북한 양자간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간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나, 냉전체제 붕괴이후 미국의 외교공세를 중국 牽制戰略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進出政策을 결코 긍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도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내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줄곧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을 제공해 왔는 바,³⁰⁾

29) 李鵬 총리는 1994년 11월 한국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가진 제주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형성해야 하며, 이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관련국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바, 북한과 한국이 당연히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1995년 5월 이홍구 국무총리 방중시에도 李鵬 총리는 한반도의 현정전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 당사자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에 동의한 바 있다. 『文匯報』(香港), 1994. 11. 5; 『東亞日報』, 1995. 5. 11.

30) 중국은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난국

이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남북한, 중, 미 등 관련 당사자 모두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直接 當事國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정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한반도문제가 현실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어느 일방이 排除된 채 해결되어서는 안되며 해결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³¹⁾ 또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 구태여 한국의 입장을 정면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에서 主導權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事案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국 문제와 관련 남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일본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

을 극복해 나가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계속 식량과 원유를 공급해 주고 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중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대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31)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문제가 한민족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여 왔다. “中韓兩國建交聯合公報,” 「人民日報」, 1992. 8. 25.

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한반도문제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役割增大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 일본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19세기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 문제를 놓고 중·일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결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駐韓美軍 撤收問題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바,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대한 중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肯定的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影響力 維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가라는 두가지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구소련 붕괴이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안정유지 세력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중국의 安保에 威脅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³²⁾ 冷戰體制가 유지되고 중·소간 긴장이 지속되었을 당시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한 구소련의 군사위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진입된 현상황에서 중·

32) 아태지역 주둔미군이 역내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중국측 입장에 대해서는 席來旺, “美國在亞太的軍事存在,” 「現代國際關係」, 1994年 第10期 (1994. 10), pp. 10~14 참조.

러관계 개선으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安保威脅이 거의 해소된 상황에 있고 미국이 세계 唯一霸權國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국에게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중국은 더 이상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³³⁾ 즉 중국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主導權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유사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주일미군은 일본의 軍事力 증강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主權回復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될 경우 주한미군과 중국이 중국 邊境地域에서 직접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외국에 軍事基地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단 한명의 중국군도 주둔시키지 않고 있고, 주변국에 대해 결코 霸權政策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군의 해외 주둔을 간접 비난하고 있다.³⁴⁾

또한 중국은 주한미군과 한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33) David Shambaugh, "The Insecurity of Security: The PLA's Evolving Doctrine and Threat Perceptions towards 2000,"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1 (Spring 1994), p. 12.

34) "錢其琛在聯大發表重要講話," 「人民日報」, 1993. 9. 30; "李鵬談申辦奧運及國際問題國際形勢," 「人民日報」, 1993. 9. 11.

간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⁵⁾ 중국은 북한의 經濟難으로 남북한간 국력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해지고 있으며, 북한이 점차 한반도 現狀維持를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³⁶⁾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軍事威脅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名分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이 급속하게 철수하는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國際孤立과 심각한 經濟難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에 대해 突發行爲를 자행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주일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중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한반도 안정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본내 미군의

35) 申相振·全東震,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1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02 참조.

36)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1995년 1월 17일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陶炳蔚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다.

37)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과도한 압력과 제재를 행사할 경우 북한이 돌발행위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Wang Dajun, Jiang Ye, "The Nuclear Issue of the DPRK," *Beijing Review*, July 4~10, 1994, p. 17; 「文匯報」(香港), 1994. 6. 10.

지속 주둔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철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문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운용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多者安保協力體 형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은 구소련에 의해서 제기되어 온 아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주장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냉전 이후 地域紛爭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과 러시아의 발언권이 감소되는 등 多極化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점차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³⁸⁾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

38) 아태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국의 동북아정책 전망: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남북한관계 현황 및 94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3-0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pp. 19~20;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11 참조.

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 창설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미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에 江澤民 주석이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 창설문제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아태지역이 지닌 독특한 特性을 이유로 현단계에서 아태경제협력체가 會員國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안보협력체로 발전되는데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가까운 시일내에 형성될 경우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 및 홍콩과 대만에 대한 主權回復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간섭이 초래될 수 있으며, 중국내 인권문제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문제 등과 관련, 중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內政不干涉 등 平和共存 5개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이들 지역이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다자안보협력체 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양자간 신뢰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³⁹⁾

39) 중국은 미·소 양대 군사집단간 대립으로 갈등을 겪어온 유럽과는 달리, 아태지역은 강대국간 갈등 이외에도 지역국간 對立要因이 다양하게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地理的 廣範성과 文化的 多樣性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江澤民, “中日關係和國內外大事,” 「人民日報」, 1993. 8. 9.

또한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점차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중국의 安保利益 및 經濟繁榮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형성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40)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1993년 이래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6자간 안보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95년 말에는 중국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주최할 예정으로 있다.⁴⁰⁾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지역국간 상호 불신 등을 이유로 가까운 시일내에 강력한 拘束力을 가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데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국제적으로 封鎖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중국에 대한 봉쇄일환책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중·미 등 지역내 양자간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40)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陸忠偉와 필자간의 대화, 1995. 6. 30.

있으며, 한반도문제 등 지역문제는 원칙적으로 미국 등 域外 國家의 개입을 배제하고 관련지역국 쌍방간의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⁴¹⁾ 다시 말해서, 중국은 아직 강력한 拘束力을 갖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소지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한반도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반도 平和體制가 다자안보대화과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留保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유지 등 한반도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간 직접 접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미간 상호 不信 解消 차원의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41) Guo Zhenyuan,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CCIS International Review*, no. 1 (August 1994), pp. 51~54; Guo Zhenyuan,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pp. 21~22.

3. 일본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 일본은 자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특별한 제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 평화협정에 대한 國際的 保障者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분석한다.

일본은 냉전종결 이후 미국이 자국의 국내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본에게 「世界的 同伴者關係」 구축을 위한 政治·安
保的 役割 分擔을 요구함에 따라⁴²⁾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안
보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고, 동시에 地域強國으로서의 영향력
과 지위를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동북아 정책목표는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政治·軍事的 役割을 分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정책목표에 따라 일본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통해 미·일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중

42) Robert Hormats, "Roo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 (Summer 1991), pp. 132~149.

대 및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그리고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및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⁴³⁾ 일본의 政治·安保的 役割增大 노력 및 이를 위한 체제정비의 구체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한데 이어(1992. 10. 14),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1993. 3. 26).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실적을 쌓아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평화감시를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이 시도될 경우, 이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일 것이다.

둘째, 일본은 국제문제에 대한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新保守化로의 정계재편을 추진하고

43) 일본의 총리자문기구인 「방위문제간담회」도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엔의 기치아래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朝日新聞」, 1994. 7. 19.

44) 이와 관련, 오와타(小和田恒) 駐유엔 일본대사는 1994년 6월 8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안보리 개편 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 희망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朝日新聞」, 1994. 6. 9.

있다. 최근 일본은 국제분쟁에서 일본에 대한 역할증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헌법을 확대 해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합법화를 위한 憲法改正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내적으로 「보통국가」를 내세워 정치·군사적 대국화를 지향하기 위한 新保守主義的 政界再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북한핵문제 미해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구실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有事立法」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역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헌법의 확대해석 및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⁴⁵⁾

비록 무라야마 내각 출범(1994. 6. 29)과 신내각의 평화주의적 외교노선 채택으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계재편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1994년 1월 29일 채택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를 치루어 나가면서 保守主義 兩黨制로의 회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⁴⁶⁾ 이에 따라 일본은 「보통국가」 지향을 구실로 政治

45) 특히 하타 前 연립내각을 주도했던 新生黨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적 역할증대 및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 도입 및 「有事立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헌법을 확대 해석하려 하거나, 개헌논의까지 활성화시키려 하였다. 「讀賣新聞」, 1994. 4. 24; 「朝日新聞」, 1994. 5. 11.

46) 일본 정계는 새로운 선거제하에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궁극적으로 新保守(신생당 등 야당연합세력+자민당내

大國化 노선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일본은 정치·안보면에서의 역할증대를 위해 對外援助를 戰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게 자본, 기술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제한된 대외원조 및 정치·경제적 역할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 정치·경제·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원조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시기에 일본은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세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4차 해외원조 계획 중기목표를 500억 달러로 책정하여 달성한 바 있으며 (1988~1991년간 누계 380억 달러, 1992년 실적 120억 달러), 냉전종결과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에 따른 美·日 役割分擔 및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

보수적 개혁추진 세력+사회당내 중도 우파세력) 對 리버럴(자민당 주류파+사회당+사키가케) 이라는 兩黨制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⁴⁷⁾

일본은 이와 같은 대외원조 재원을 기반으로 1991년 4월 「대의 원조제공의 4가지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원조계획을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⁴⁸⁾ 일본은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하여 「외국원조계획」(OD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일본은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軍事力 現代化를 통한 獨立的 防衛力 確保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56중기업무계획(1983~1987)」 및 「제1차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을 통해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 등 지역적 군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해 왔고, 「제2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1~1995)」(총22조 7천5백억 엔)을 수립하여 이지스함 도입 등 호위함 현대화, 최신예미사일 및 조기경보기(AWACS) 도입, 공중급유기 도입, F-15 국산화 등 前進防禦 능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⁴⁹⁾

47) 「朝日新聞」, 1993. 2. 26.

48) 일본의 원조제공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피원조국의 군사비,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무기 수출과 수입, 둘째, 민주화를 위한 노력, 셋째, 인권과 자유존중, 넷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이다. Takao Kawakami,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49)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일본 정부는 자위대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위대의 감축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내외에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의 군사력 현대화 방향은 장기적으로 항공모함 도입 등을 통한 해외 장거리 개입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海上輸送路 방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위와 같은 군사력 현대화를 기반으로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식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방위개념을 「전수방위」로부터 「지역방위」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수송로 방위능력 제고를 위한 일본의 노력과 관련하여 일본은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평화적인 목적과 이용을 내세우면서 核武器 잠재력 확보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尖端技術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로써 일본은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생산·이용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대량 반입하고, 대규모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⁵⁰⁾ 일본은 자국이 非核3原則(보유·제조·반입 금지)을

No. 151 (1993. 6), pp. 64~66.

50) 일본은 1992년 11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반입한데 이어 1993년 4월 28일 아오모리(靑森)縣 룩카쇼무라(六ヶ所村)에 세계 최대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하였고, 1994년 4월 5일에는

견지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핵에너지 이용 계획은 환경오염 등 안전성의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손쉽게 핵폭탄 제조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核潛在力 측면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⁵¹⁾

결국 일본은 평화주의적 외교노선을 선언한 무라야마 신내각 출범(1994. 6. 29)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이(福井)縣 쓰루가(敦賀)市の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를 시험가동시켰다.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pp. 43~53; 「朝日新聞(夕刊)」, 1994. 4. 5.

- 51)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계획이 核擴散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國內外 輿論을 무마하기 위해 1994년 5월 18일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 플루토늄 수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고속증식로를 장래 원자력발전의 주력으로 삼고 2020~2030년경 실용화하기로 했던 1987년의 장기계획안을 2030년경으로 다소 연기하였고, 2000년에 연간 3000톤 규모로 계획했던 우라늄 농축 규모도 1500톤 정도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일본 핵개발에 대한 외국의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플루토늄을 이용한 原子力 發展方式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朝日新聞」, 1994. 6. 14; 1994. 6. 27; 1994. 7. 3.

한편 일본의 對韓半島政策을 살펴보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요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은 ①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②자국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며, ③한반도에서 미·중·러 등 타강대국 보다 더 큰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⁵²⁾

일본은 이러한 대한반도 인식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하에 내심 대북한접근을 통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동북아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동북아정책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 한국에 편향된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였다.⁵³⁾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안보문제에서 발언권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한국의 중·러와의 수교를 계기로 재차 對北韓 接近 政策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상당기간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 및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한

52)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p. 33.

53) 전동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09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3~19.

국에 갖고 있는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韓國偏向의 南北韓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미·일 역할분담 및 경제적 영향력을 증시하는 국제질서 변화속에서 북·일 수교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⁵⁴⁾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영향력 증대를 위한 보장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서 자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특별한 제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대한반도 安保目標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國際的 保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은 북·일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

54) 앞의 보고서, pp. 24~54.

제적 보장방식과 관련, 일본은 자국이 배제된 「2+2」 방식 보다는 「2+4」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140만명이 넘는 병력이 비무장지대들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어서 평화체제 구축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⁵⁵⁾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및 군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군비통제를 남북한이 주도하더라도 그 實踐에 대해서는 國際的 檢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적 검증에 자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군사전문지를 통해 시사하고 있다.⁵⁶⁾

구체적으로 일본은 남북한 양측의 군사력 및 군사배치 이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비무장 지대에 대한 감시·통제 등 檢證技術面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⁵⁷⁾ 물론 남북한의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人的 支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미국과 중·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재정긴축을 이유로 검증 등에 관한 일본의 경제·기술적 공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

55) 防衛廳 編, 「防衛白書」(1994), pp. 47~58.

56)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p. 112~115.

57) Reinhard Drifte, *Japan'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Case of Arms Control* (London: The Athlone Press, 1990), p. 81.

의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측은 비무장지대의 엄정한 감시를 위해서 미·일·중·러가 합동 혹은 중·러·북한과 미·일·한국의 査察團이 사찰하는 체제를 고려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비무장지대 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일본의 국가기술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남북한 및 보장국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偵察衛星을 보유할 경우,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완충지대를 감시(monitering)하기 위한 센서 등의 개발 내지 운영이다. 일본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電子技術을 이용하여 유효한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입회 사찰이나 공중사찰에 있어서 사찰을 위한 裝備의 제공과 査察費用의 일부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특수한 민족감정을 고려하여 인적 지원은 미국에 위임하고 일본은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미·일간 역할분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에 상당기간 安定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미군이 당분간

58)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 第19卷 3號 (1991年 12月), pp. 61~62.

주둔하여 지역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군의 한국주둔으로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가상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동시에 역으로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⁵⁹⁾

한편 일본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문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최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참여 증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노력 등 유엔중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바,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감시를 유엔의 平和維持活動에 위임할 경우 유엔평화유지활동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자위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 평화보장국으로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국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2+4」 방식이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또는 유엔을 통한 평화보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러시아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구체적인 立場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러시아는 南北對話를 통한 韓半島 平和定着을 희망하고 있다는 수준에서의 발언에 그

59)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p. 110.

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동북아정책 또는 한반도정책 속에서 추론될 수 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으로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地戰略的 利害와 아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地經學的 利害에 기초하고 있다.⁶⁰⁾ 즉 러시아는 안보적 차원에서 구소련 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태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 安保政策은 역내 전략환경을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도있게 관여한다는 目標 위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목표는 ①역내 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적극 동참·주도, ②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③중국의 反蘇化 방지, ④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⑤域內 軍縮의 실현, ⑥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60) 특히 러시아는 아태 지역이 세계의 공업생산의 60%를 생산하고, 세계의 무역에 접하는 비율도 약 40%에 이르며(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4, 1993г. стр. 28), 경제성장 속도도 아태 지역 전체평균 4.2% (중국 10.14%, 미국 3.2%, 일본은 최근까지 2.2%, 한국 6.4%, 아세안 6.2%)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Уражи-мил-ваши-리에-비-치-코-지-에-즈-니-코-프, “아시아·太平洋地域におけるロシアの對外政策,” 菊地茂雄 譯, 『新防衛論集』, 第21卷 第4號 (1994年 3月), pp. 43~44.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經濟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으며, 또한 중국·북한 등과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즉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과제인 經濟活性化를 위한 外的 與件 조성이라는 국내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①동북아 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 ②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③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④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구소련 해체 이후 불안정한 독립국가연합의 미래와 러시아의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라 향후 러시아는 일차적으로 國內問題 해결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②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독립국가연합 구성국가들과의 관계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③외교정책 추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동북아지역은 유럽에 비해 부차적인 고려대상이었다.⁶¹⁾

한편 종래 구소련은 혁명과 이념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友

61) 자세한 내용은 강원식, “러시아의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방향,” 『중소연구』, 제17권 제4호 (1993/4 겨울), pp. 91~121 참조.

敵概念을 인식하여 왔으나, 경제발전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용성·합리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親疏關係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인식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사회주의적 유대를 강조한 대북한 일변도정책에서 탈피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도 도모하여야 한다는 韓半島 均衡政策으로 발전하였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目標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남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③북한에 대한 영향력 견지 모색, ④일본의 대러시아 접근 유도, ⑤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南北對話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개설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한이 최근 들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南韓과의 경제교류를 모색·추진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이익과 안보이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유지정책이 러시아의 아태 정책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 한·소 수교 이후 악화되어 온 대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對北韓 政策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일성 사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도 그동안 악화되었던 대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미·일의 대북한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기존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일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경우, 러시아만 고립된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 이해의 일치와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미·일의 대북한 접근에 따른 러시아의 기득권 상실방지 노력 등으로 북·러간 정치관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러간 정치관계 발전의 幅과 速度는 미·일·중의 동북아 역내 영향력 증대 및 북한의 대미·일관계 진전 정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황에 비추어 西方과의 경제협

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는 매우 크며,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이 일본에 대한 자극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대러시아 진출이 적극화되는 계기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대일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본이 북방영토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대일 관계개선 정책 및 나아가서 아태 진출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아태 경제협력개발회의(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의 가입을 실현하고,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機構를 창설함으로써 아태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 정책은 앞으로도 비록 최근 러시아 외교가 「동」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외국」 외교, 對美·서방외교 보다 계속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아시아지역을 주요한 武器市場으로 간주하고 역내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경제지원 획득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적극적인 대러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 정책은 아직도 명확한 政策方向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첫째, 아시아에 대한 外交政策과 軍事政策 간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역내 국가들의 인식에서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建設者라기 보다는 불확실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 역내 정세가 세계정세와 달리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行動半徑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앞으로 열린 대통령의 한국방문(1992. 11), 중국방문(1992. 12), 인도방문(1993. 1), 일본방문(1993. 10) 등에서 천명된 쌍무적 우호협력관계 강화와 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 강조 등 平和指向的 外交政策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내 군사태세와 군사력을 조정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동시에, 러시아의 행동반경이 확보될 수 있는 유리한 정세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국제관계에서 주변적 지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韓半島 平和體制 전환에 대한 러시아의 구체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바,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

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평화체제로의 轉換方式, 특히 平和協定의 締結 主體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으로 러시아(구소련)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며, 휴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에 직접 관여할 國際法的 責任 및 權限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남북한 쌍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러시아로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등 휴전체제 대체과정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은 동북아정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연계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중국 등 이해관련국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뚜렷한 政策目標과 政策推進方向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러한 정책이 公式 文書나 외교정책결정권자 또는 실무자의 公式 言明으로 표명된 바는 없으나, 앞서 살펴

본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 일반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시민사회 형성에 최적한 외적 조건의 창출”을 주요 외교정책목표로 제기하고 있는 데,⁶²⁾ 주변정세의 안정은 러시아의 국내번영을 담보하는 일차적인 외적 조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필수적이며, 특히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인접지역의 정세 안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폭발할 경우, 러시아는 남북한 쌍방에 대한 복합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한반도정세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즉 어느 일방에 대한 지원은 다른 일방의 적대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므로 남북 쌍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른바 紛爭仲裁者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미·중·일 등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또한 남북한의 뿌리깊은 불신과 대립을 고려할 때, 중재역할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사태전개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도 크며, 이런 점에서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쟁

62) 이는 러시아 외무부가 1992년 12월 1일 발표한 「외교정책문서」에서 구소련 각국에 남아있는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 등 「시민의 이익」 옹호, 핵무기 삭감을 통한 「핵무기가 위협이 되지 않는 구조」 형성 등과 함께 외교정책목표로서 제시된 것이다. INTERFAX, December 1, 1993; FBIS-SOV-92-232, December 2, 1992, pp. 3~5.

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기본적으로 평화분위기를 활용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정책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며, 이는 동시에 여전히 강력한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않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특히 對日 關係改善을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의 對日 政策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개선·강화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對中關係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러·중 양국이 기본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對남북한 親疎關係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러·중관계의 갈등요인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휴전협정 사문화전략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차원에서 공식 언명은 없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 대체문제와 관련하여 南北平和協定 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러시아는 한국전쟁의 實質的 背後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

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현재 한반도 정치·군사문제 해결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데 不滿을 갖고 있으며,⁶³⁾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평화체제 전환방식은 반대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또는 국제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대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준거로 하여 한반도 정치·군사 질서가 재편성될 경우,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봉쇄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美國의 影響力이 과도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보다는 남한의 남북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즉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북한 쌍방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交渉過程 뿐만 아니라 國際的 保障過程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아태정책 추진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러시아 외무부가 1992년 12월 발표한 「외교정책문서」에 의하면, 韓半島 統一은 첫째, 국경지역에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둘째, 아태지역 국제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러시아 外交의 行動半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63) 이와 관련, 러시아의 한국전쟁 관련문서 공개를 통한 소련의 韓國 戰爭 介入事實 입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⁶⁴⁾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아태 정책의 전반적 애로를 타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는 유라시아국가임을 천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제에 매우 제한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또한 이를 통해 조성되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용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평화애호국가로서의 러시아의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역내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돌파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者로서 러시아가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은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러시아가 주장한 「8자회담」 논리에서도 발견된다. 「8자회담」은 1994년 3월 24일 추르킨 러시아 외무차관이 모스크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 거부로 인한 한반도 정세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관계국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이 참가하는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북한간의 해결을 강력 주장하는 北韓의 입장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

64) *INTERFAX*, December 1, 1992; *FBIS-SOV-92-232*, December 2, 1992, p. 5.

합적으로 감안할 때, 러시아가 「8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가 「8자회담」을 계속 주장한 內面的 理由는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하였듯이, 러시아가 한반도문제를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行動半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바로 이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러시아가 「8자회담」을 제의한 직접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논의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贊否를 명확하게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지만 국제회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러시아의 평화이미지를 선양하는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취한다는 것이다.⁶⁵⁾

65) 러시아의 이와 같은 「8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당초 消極的 反應을 보였다. 즉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4년 4월 1일 러시아가 제안한 한반도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국간 교섭에 대한 조선중앙통신(KCNA)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재와 압력에 반대하고 정치적 교섭을 통한 해결을 보이려 하는 러시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다국간 교섭 제안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즉 핵문제는 발생원인으로 보아도 그 성격으로 보아도 미·북한간에 해결되어야 할 정치·군사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후 북한은 「8자회담」에 대해 肯定的 立場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 이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제안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러시아의 反感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즉 김영남 외교부장은 1994년 6월 6~8일간 우크라이나 방문시, 러시아의 국제회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둘째, 러시아는 45,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핵保有國으로서 미국과 함께 NPT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인 바, 접경국가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구소련 핵廢棄問題와도 관련하여 나쁜 선례로 작용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 및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구소련 핵관리의 직접적 당사국인 러시아로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NPT체제 유지라는 基本原則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平和維持·運用方案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國際的 保障問題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직접·적극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다.⁶⁶⁾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6월 9일 손성필 러시아주재 북한대사는 러시아가 제안한 국제회의에 대한 緊急性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방안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몇 안되는 평화적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 66) 러시아는 현재 남북한과의 軍事交流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한국과는 1994년 4월 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을 통하여 「1994~1995년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軍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 및 장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對韓 借款 원리금 상환 차원에서 첨단무기 판매를 모색·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과의 군사교류를 모색하면서도 북한과의 기존 군사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즉 구소련 해체후에도 CIS 통합군과 북한간 「군사관계발전을 위한 긴급조치 계획문서」가 이미 조인(1992.3)된 바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軍인사교류를 중심으로 군사유대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계속 강조하여

이에 따라 러시아는 현재 남북한과의 군사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북·러 군사동맹조약 폐기통보 공식발표(1995. 9. 7)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한과는 현재 不可侵條項을 포함한 基本條約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발언력이 있으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보장조약형, 유엔보장형, 다자간 지역안전보장형, 교차불가침협정형 등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이든 간에 우선 일차적으로 러시아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美·中만에 의한 「2+2」 방식 등에는 반대할 것이다. 구체적인 보장방식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주변4국에 의한 보장조약 체결 또는 주변4국의 交叉不可侵條約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휴전협정 서명자로서의 미·중의 직접적 관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변4국에 의한 국제적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경우, 러시아는 유엔보장형을 주장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제도화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가 平和地帶化되고 남북간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관리할

왔듯이 대북한 무기공급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군사부품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최근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하에 구소련 구성공화국 등에 러시아군을 파견하고 있는데, 군대의 파견은 당해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제고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주변4국 또는 유엔의 국제적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러시아군이 한반도 평화유지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료되고 평화상태가 정착되면, 당연히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유엔사 해체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소련군의 북한 철수를 강조하는 등 원칙적 입장에서 철수를 주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 한·미간의 쌍무관계에 입각한 것으로서 휴전협정 존폐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는 과거 소련 시대와 달리 러시아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거부반응을 적게 느끼고 있고, 주한미군 문제로 인하여 미국 및 한국의 반발을 촉발시킬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간의 군비축소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韓半島 軍備統制가 한반도내의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비통제와 연

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추세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넷째,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制 설립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이래로 계속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유럽의 평화·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 등의 安全과 경제·과학기술·문화·인도주의·인권 등의 協力을 증진하는 기틀로 작용하였는 데, 아시아에서도 이를 모델로 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협력을 모색·증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창설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理由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러시아의 역내 발언권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역내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國際舞臺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역내 다자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도 이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IV.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基本方向

1. 기본원칙

국제법적으로 停戰(truce)이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며, 교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休戰(armistice)과 구별된다. 따라서 정전기간이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각 교전당사자는 정전조건에 따라 상대방 교전자에게 적절히 통고한 후 임의로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전개념에 의하면 정전기간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이므로 법적으로 戰時狀態이며,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전쟁은 종결된다.¹⁾

그러나 停戰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정의가 변하기 시작하여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없이 정전협정의 이행·실천만으로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실제로 平和條約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평화상태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스톤(Julius Stone)이다. 즉 스톤은 一般 休戰(general armistice)의 경우, 정전기간이 장기간이고, 전쟁 및 무력적대행위의 포기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며, 비무장지대 설치,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전쟁재발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戰爭이 사실상으로 뿐만 아니라 법

1)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Holt, 1967), pp. 92~93; G. Schwarzenberger, *The Law of Armed Conflict* (London: Stevens, 1968), p. 726.

를상으로도 종료한다고 주장한다.²⁾ 이에 따라 스톤의 견해에 동조하여 한국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스타크(J. G. Starke)와 같은 학자도 있다.³⁾

그러나 이 견해는 「현행의 법」(lege lata)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立法論(lege ferenda)에 불과하고, 이러한 국가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있다고 판결한 判例도 희소하다. 더욱이 1953년 체결된 한국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적대세력 쌍방간의 정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 정치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즉 휴전협정 전문은 동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을 갖는 협정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60항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을 규정하고 있는 등 휴전협정 자체가 새로운 協定에 의해 대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전협정은 본질상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단순히 적대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성격의 軍事的 協定에 불과하므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현재 북한이 휴전협정을 사문화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

2) Julius Stone, *Legal Control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and London, 1973), p. 644.

3) J. G. Starke,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1984), p. 546; 柳炳華, “한국통일에 관련된 몇가지 국제법적 문제,” 『國際法學會論叢』, 제33권 제2호 (1988년 12월), pp. 23~27 참조.

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되, 광복50주년 대통령경축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基本原則을 견지하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南北 當事者解決原則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民族自決原則과 當事者解決原則에 입각하여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문제도 남북 당사자간에 논의·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국의 협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實效性 保障原則이다. 우선 한국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여 주변국가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미·일의 대북한 접촉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도록 요청하고, 중·러의 대북한 설득 및 압력 행사를 요청한다. 또한 평화체제 전환시에는 실질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획득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편 평화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맺고 있는 기존의 정치·군사적 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즉 既締結條約의 尊重原則에 따라 남북한이 각각 제3자와 체결한 기존의 동맹

조약과 기타 善隣友好關係는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南北間 既合意事項 尊重原則이다. 즉 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전환을 포함한 모든 통일과정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틀에 기초하여 추진된다면 남북간의 모든 합의가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徒勞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의 모든 평화정착·통일실현 과정은 남북한의 총리가 정부당국 차원에서 체결하고 엄숙히 민족 앞에 그 이행·실천을 약속한 최초의 합의인 기본합의서 체제의 테두리내에서 모색·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法的 意味와 內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이란 규정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停戰狀態(법적으로 戰時的 연장)이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② 남북한은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평화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南北 當事者解決原則」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남북한은 평화상태를 이룩하기 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維持·遵守原則」이라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에

전쟁상태 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회복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9조의 정신에 따라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도 유지되고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平和體制 轉換形態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형태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두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뒤에서 자세히 논술될 것이나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은 기본합의서만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없고 새로운 합의문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른 형식의 남북 평화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과 남북평화협정 체결방법을 검토한다.

가. 基本合意書 이행·실천방법

제2차 대전후 과거 전쟁을 치른 전쟁당사자간에 전쟁의 종결과 평화상태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평화협정 대신에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修交 내지 關係正常化를 위한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구서독과 소련은 1955년에 수교를 하여

평화관계를 설정하였으며, 한국전에서 교전당사자였던 중국과 미국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도 반드시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기합의된 基本合意書를 근간으로 하여 동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남북한이 기합의한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 합의 사항의 이행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둘째,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사실상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들, 예컨대 戰爭의 原因 除去 및 戰爭責任 糾明問題(전범처벌 포함), 賠償·補償問題 등의 논의를 우회할 수 있다.

셋째,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경계선으로,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할 경우 자연스럽게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이룩할 수 있다.⁴⁾

그러나 이 입장은 본질적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휴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스

4) 李長熙, “韓國停戰協定の 平和協定體制로의 轉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9권 1호 (1994), pp. 68~69 참조

톤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이 견해는 이론상으로나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여 기본합의서에 전쟁상태의 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회복이 명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기본합의서 제5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동 합의서의 이행·실천만으로는 法的인 意味에서의 平和體制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동 조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관계가 정전상태(법적으로 戰時)이며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남북 당사자가 정전협정을 유지·준수한다는 약속이다. 요컨대 당분간 휴전체제의 지속이 기본합의서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한의 공통된 의사인 것이다.

결국 현재의 기본합의서 제5조만으로는 휴전협정체제를 종료시키거나 또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基本合意書의 성실한 이행·실천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 또는 기반이 될 수 있어도, 현재의 합의서만으로는 평화체제 전환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이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 제5조를 사문화시키고 휴전협정의 종료 또는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상태로의 회복을 선언하

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修正過程 또는 별도의 附屬合意書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을 의미하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건도 모두 평화협정으로 통칭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기본합의서 수정은 결국 평화협정 채택과 大同小異하게 된다.

둘째, 북한이 현재 휴전체제를 유명무실화하고 휴전협정을 사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활용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先 평화분위기 조성, 後 휴전협정 대체」를 기본구도로 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은 현실성을 결여한 경직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제법적 효력이 모호한 상태인 바, 이를 근거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남북한이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국제사회가 기본합의서의 國際的 效力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傳統的 平和協定 체결방법

통상적으로 전쟁은 휴전협정(조약)을 체결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평화(강화)회의를 개최하여 平和協定(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평화협정의 체결은 전쟁상태의 종료와 함께 평화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며, 평화협정 체결이 전쟁을 종료하는 가장 古典的이고 傳統的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당사자

가 합의의 형식으로 전쟁을 종료시키고 전쟁중 야기된 당사자 간의 모든 차이점을 정확한 용어로 정리할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현재의 정전협정을 새로운 남북한간의 합의 즉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휴전협정의 체결권자가 대체로 軍司令官인 데 반하여, 평화협정의 체결권자는 國家元首 또는 政府代表이며, 일반적으로 비준을 요한다.⁶⁾

이 방법은 첫째, 남북한이 明示的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둘째,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상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當事者問題로서 한국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5) M.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59), p. 588.

6) M.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p. 590; C. Phillipson, *Termination of War and Treaties of Peace* (London, 1961), pp. 188~190. 평화협정의 효력은 일반조약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준서 교환시가 아니라 서명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서명되었으나 비준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휴전협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평화협정 서명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준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휴전협정을 改正한 것으로 된다.

동의를 얻기 어렵다.

둘째, 통상 평화협정의 內容으로 제시되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한다든지, 전범처벌 등 戰爭責任問題와 賠償·補償問題 등을 남북한간에 논의하기 어렵다.

셋째, 평화협정은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고 양국관계를 항구적인 토대에서 완전 타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統一을 목표로 하는 분단국 간의 暫定的 關係를 규율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넷째, 남북 평화협정은 현재 남북한간에 기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존재와 그 이행 및 실천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다. 바람직한 代案: 南北平和協定 체결

이상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의 長點을 취하고 短點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남북한의 현실에 부합하는 독특한 방안이 모색·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도 아닌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그 명칭을 南北平和協定이라고 한다.

즉 어떤 형식의 것이든지 간에 전쟁의 종료와 평화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文件은 모두 평화협정(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이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형식의 평화협정이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방법을 추진하되,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상기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의 장점으로 제기되고 있듯이,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평화협정의 내용에서 戰爭原因과 戰爭責任 糾明問題 및 賠償·補償問題 등의 논의를 우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방법의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남북평화협정을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잠정적 성격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에서 기인한 당사자문제는 사실상 평화협정 체결방법 뿐만 아니라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을 추진할 경우에도 공히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한편 平和體制 轉換時期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이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원칙을 준수하되, 북한의 정책대응과 주변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조기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은 남북간의 상호 平和意志가 확인되어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선행된 다음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先 평화체제 기반 조성, 後 평화체제 전환」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남북한의 상호 실제 인정·존중, ②북한의 남조선 혁명전략 포기과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③남북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불가침관련 조항들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한 政治的·軍事的 信賴構築, ④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민족동질성 회복, ⑤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준수(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의 條件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남북한간에 분위기 내지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실질적이고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평화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은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통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합의서가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준수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불완전한 평화를 추구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불안정한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모색되는 평화분위기는 결국 불안정한 평화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안정적인 평화협정의 틀 속에서 恒久的인 平和를 모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결국 평화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먼저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논쟁과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평화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의 정책방향 및 주변정세 변화방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즉 점진적·단계적 접근구도를 원칙적으로 견지하되, 북한이 북·미 관계개선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북·미간에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정세를 감안하여 남북평화협정 체결 또는 이를 위한 필요한 정책조치들을 신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한편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의 원인과 책임의 규명, 이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전범 처리 및 사면 등을 통해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우호평화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평화협정에는 일반적으로 ①적대관계 및 전쟁상태 해소와 平和狀態로의 회복을 규정하는 條項, ②戰爭責任條項, ③政治·領土條項(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경계선의 상호 존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분쟁 처리, 전범 처리 등), ④經濟·財政條項(배상·보상문제, 전쟁발발 이전의 계약 및 협정 이행문제 등), ⑤保障條項(비무장 의무, 비무장지대 설치, 군비통제, 국제평화유지군 배치, 국제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평화협정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해 부과하는 不平等條約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왔다. 따라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고 전쟁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통적 평화협정

7) 평화협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Wilhelm G. Grewe, "Peace Treaties,"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 (Amsterdam, New York, Oxford: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pp. 102~110 참조; 평화협정의 事例檢討에 관해서는 *ibid.*, pp. 110~129.

방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즉 평화협정의 내용은 평화협정 당사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전쟁책임이나 배상·보상문제를 합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의 내용은 이미 전쟁이 종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책임이나 배상·보상 등 전쟁종결보다는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지향이라는 平和回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북 평화협정은 과거 처리문제보다는 향후의 평화정착과 이를 위한 제도적·운용적 틀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평화협정은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성안되어야 하는 바, 基本合意書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의 主要 內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南北 平和共存條項이다. 남북한간의 상호 실체 인정을 전제로 전쟁상태 종결과 평화공존관계로의 이행을 천명한다. 이와 관련,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주권, 국경, 내정불간섭 등의 국가승인의 의미를 갖는 용어 사용은 피한다.

둘째, 平和管理機構 設置條項이다. 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기구를 활용하는 등 정전협정체제하의 관리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남북 평화체제를 관리할 기구를 명시한다.

셋째, 武力不行使 및 不可侵條項이다.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을 재확인하여, 무력행사 포기 및 상호 불가침을 규정한다. 특히 무력의 개념에 테러, 파괴 및 전복행위 등을 포함시켜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설치한다.

넷째, 境界線條項이다.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되,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서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현행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⁸⁾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중간선을 불가침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불가침경계선은 영토보존을 위한 국경선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위한 잠정적 성격의 것임을 명시한다.

다섯째, 軍事的 信賴構築條項이다. 무력불행사 및 불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쌍방이 군축문제를 성의있게 협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이를 위해 군사정보 교환, 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참관, 현장검증과 상호 감치체제 교환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군사력 불균형 시정 및 군비축소 논의 등에 관한 신뢰구축 조치를 규정한다.

여섯째, 韓半島 非核化條項이다.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의 비핵5원칙을 명시한다.

8)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8월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선포하고 이를 서해상 분계선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해5도 인접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을 공식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 북방한계선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일곱째, 國際的 保障條項이다.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여덟째, 紛爭의 平和的 解決條項이다. 남북간 의견대립 및 분쟁 발생시, 일차적으로 남북간 직접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이차적으로 국제적 조정·중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한다.

아홉째, 既締結條約과의 關係條項이다.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 제9조와 같이 남북 평화협정이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한 기존 정치·군사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을 설치한다.

열째, 統一條項이다.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원칙을 천명하면서,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협정이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 남북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임을 천명하도록 함.

한편 필요할 경우, 남북 평화협정과 기본합의서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하며, 유엔사 해체문제 등 기타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명시한다.

3. 政策推進基調 및 推進構圖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분위기가 완비되지 않았을지라도 기본합의서 이행·실천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즉각 평화협정 체결을 조기 실현함으로써 남북간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즉 평화체제 구축이 目標라는 점에 주목하여 形式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한다. 따라서 「先 평화체제 기반 조성, 後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先 평화협정 체결, 後 평화체제 구축」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규정하고 있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의 段階別 統一構圖를 견지하되, 각 단계별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에 효율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즉 남북간의 군사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화해·협력 단계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남북연합 단계에서 군비축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부문의 남북협력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는 북한이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 군비축소를 완성하면,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은 대미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지만,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활용하여 軍備統制協商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조성되는 남북간의 군사문제 직접대화와 평화분위기를 활용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로 연계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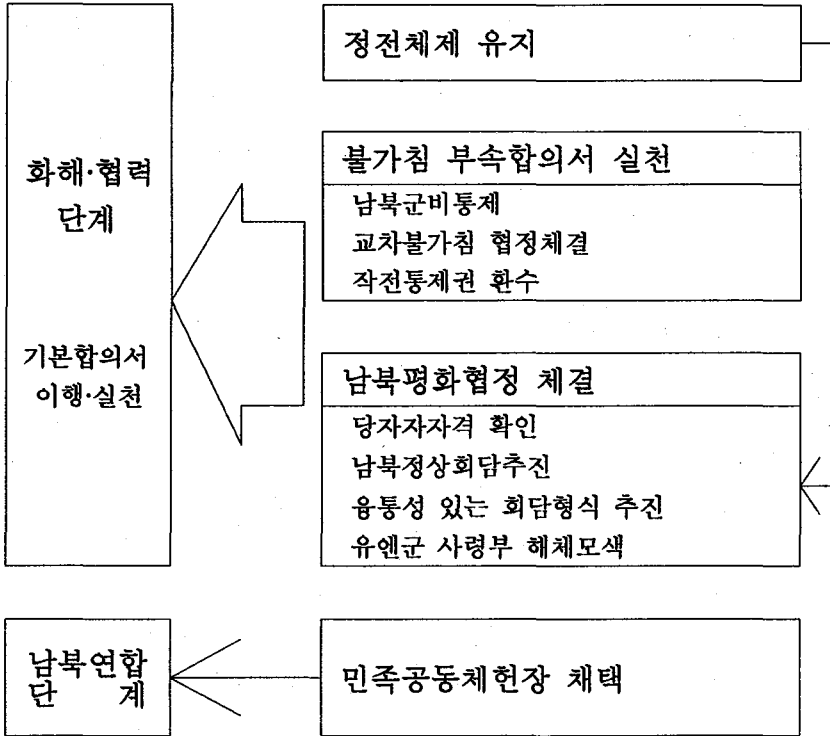
결국 향후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特定 條件과 時期를 설정하지 말고,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건이 성숙되는 여하한 시점에서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여건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융통성있게 추진하는 탄력적인 對北政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로써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기본합의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실천함으로써 명실공히 南北 和解·協力時代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南北聯合 段階로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態度 變化를 유도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3段階 接近構圖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제1단계(停戰體制 유지)에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한다.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유지·존속되어야 할 것인 바, 군사정전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제2단계(不可侵 附屬合意書 실천)에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미 관계개선 교섭과정이 진전되면서 반드시 제기될 북한의 북·미 평화

협정 체결 주장을 우회할 수 있다.



제3단계(南北平和協定 체결)에서는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자격을 확인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북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강구·추진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단계별 발전구도를 선행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로 이행·발전하는 경직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본구도로서 段階別 推進構圖를 설정

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제 1단계에서 곧바로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며, 각 단계별 정책도 반드시 당해단계에서가 아니더라도 융통성있게 다른 단계에서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V.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政策推進方向

1. 停戰體制 유지 모색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측 대표의 일방적 철수,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의 강압적 축출 등 停戰機構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을 제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위반으로서 한국은 이를 엄중 항의하고 정전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북한이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평화상태를 이룩하기 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평화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南北 當事者解決原則」과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維持·遵守原則」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에 전쟁상태 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회복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유지·준수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法論理的으로 보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위반하는 기초 위에서는 불가능하다. 즉 정전협정을 사문화시

키려는 기도를 묵인한 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그러한 협정의 명칭이 무엇이든 또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粉飾되든 불문하고, 그 협정의 실효성은 보장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그러한 협정이 잘 준수되리라고 신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제2의 停戰協定化할 위험마저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말하려면 먼저 停戰機構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을 성실히 유지·준수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維持·遵守原則」에 따라 군사정전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추진한다.

첫째, 한국은 당분간 유엔사와의 협조하에 북한에 대해 군사정위 소집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북한의 군사정전위 철수와 휴전협정 무력화 시도가 휴전협정(61항, 62항), 기본합의서(5조), 화해부속합의서(19조, 20조) 위반임을 엄중히 항의하고 준수를 촉구한다.

둘째, 유엔사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對美 直接 軍事接觸 기도를 저지한다.

셋째, 북한측의 정전협정 및 군사정전위 무실화 기도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고 國際共助를 통한 대북 압력과 설득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미국 등 참전16개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 3개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

고, 중국을 통한 대북 영향력 행사도 모색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동 대표부 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첫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기구는 정전협정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法的 根據가 없는 유명기구이다.

둘째,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기존의 군사정전위를 이 기구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군사정전위를 대체하는 합법기구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전협정 제61항에 의하면 동 협정의 수정 및 증보는 반드시 쌍방 사령관의 相互 會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문제에 관해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한 바 없다.

또한 정전협정 제62항은 동 협정이 쌍방 당사자간에 수정·증보 또는 적절한 협정의 규정에 의해 명백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도 남북사이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유지·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조치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설치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明白한 違反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도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통해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이 회담에서의 협의사항으로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中立國監督 委의 권능 제고 대책 및 비무장지대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中立國監視軍 조직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북한이 이러한 입장으로 돌아가 남북한이 마주 앉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측에 대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도록 권고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협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구 설치를 위한 공동협의를 제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군사정전위를 파기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와 같은 기구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여야 한다.

만일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려면 먼저 군사정전위를 개최하여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기초위에서, 쌍방 사령관에게 동 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를 건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쌍방사령관의 회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機構를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전관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는 마땅히 남북한이 기합의한 바 있는 南北軍事分科委員會 또는 南北軍事共同委員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정전기구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모두 無

爲로 될 경우에도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정전위원회는 1991년 3월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黃源卓 소장으로 교체한 이래 단 한번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여 왔다.

둘째,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 비서장 접촉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現 停戰協定을 준수하여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현 상태로 평화를 유지하고 판문점 直通線(군사정전위 共同日職將校間 직통전화)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¹⁾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군사정전위 철수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엄연히 지금도 유효하다.²⁾ 즉 북한이 정전

1) 이는 군사정전위 북한측 비서장의 口頭說明 내용이다. 「東亞日報」, 1994년 5월 3일; 「朝鮮日報」, 1994년 5월 3일 참조.

2) 1969년 채택된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에 따라 북한은 정전협정 타방 당사자의 義務違反을 이유로 정전협정을 停止 또는 終了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론상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정전협정 유지·준수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북한의 철수행위로부터 정전협정을 일부 시행정지 또는 종료할 의사를 유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한국군 또는 유엔군측이 북한의 정전협정 정지 또는 종료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정전협정을 「重大하게 違反」(grave breach, material breach)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정전협정 정지 또는 종료를 정당화할 수 없는 단지 輕微한 違反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둘째, 만일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한국군 또는 유엔군측의 정전협정 위반은 북한이 이미 과거에 정전협정을 重大하게 위반한 데 대해 그러한 違反에 상응하는 復仇(reprisal)에 해당하는 것인가? 셋째,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 정전기구 무력화는 정전협정 위반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전기구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것이고 양자는 不可分의一體를 이루고 있는 바, 정전협정은 유효하다고 하면서(또는 정전협정 준수 의사를 인정하면서) 정전기구에의 참여를 부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정위 무실화에도 불구하고 휴전체제가 즉각 와해되지는 않는다.

셋째, 정전협정은 당사자 일방이 정전기구로부터 철수했다고 해서 또는 그 無力化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조치로 인해 군사정전위원회 등 정전기구가 사실상 기능정지 또는 유명무실화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的 文書로서의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91년 3월 이후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이 정전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

부 성명은 정전협정의 정지 또는 종료를 의도한 法律行爲(또는 法的 文書)인가? 즉 동 성명에 정전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키려는 意思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북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대미 평화보장 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의한 政治的 宣言(政策表明으로서의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넷째, 북한이 북한측 대표를 군사정전위로부터 철수시킨 것은 정전협정 全部에 대한 施行停止 또는 終了措置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一部の 시행정지를 의미하는가? 이 가운데 특히 넷째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에 관해서는 金明基, “北韓의 軍事停戰委員會에서의 撤收와 國際法,” 『北韓學報』, 제18집 (1994), pp. 109~137 참조.

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전협정 시문화 기도에 과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정전기구 정상화를 적극 촉구하는 등 原則論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궁극적으로 휴전체제 정상화 보다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不可侵 附屬合意書 실천

가. 南北 軍備統制

한국은 「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문 부속합의서에 따라 軍事共同委를 개최하여 남북간 군비통제를 합의·실시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 군비축소를 완성하면,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은 대미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지만,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활용하여 軍備統制協商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조성되는 남북간의 군사문제 직접대화와 평화분위기를 활용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로 연계시켜나간다.

군비통제는 「先신뢰구축, 後군축」의 기존 방침을 견지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북한도 그동안 「先군축」 제안을 강조하여 왔으나, 1990년 5월 31일 제의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에서는 군사훈련·연습 제한, 비무장지

대의 평화지대화, 우발적 충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軍事的 信賴造成도 언급한 바 있다.

軍事的 信賴構築은 기본합의서 제12조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되 특히 軍事的 透明性 제고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및 통보를 의무화한다. 보병부대는 사단급 이상부대, 전차·포병·기계화부대는 여단급 이상, 유도탄 부대는 대대급, 도하부대는 연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매년 11월 30일까지 차기년도 훈련계획 통보).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단 韓·美 合同訓練의 제한·통제문제는 미국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남북협상에 대처한다.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 편성 및 배치, 군병력수, 주요 사령부 위치, 특정장비 등에 관한 軍事情報를 교환한다. 넷째, 시찰, 기념행사 참관, 교환방문, 전학 등 軍人士 交流를 실시한다. 다섯째, 비무장지대내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장비 및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비무장지대의 非武裝化를 실현하는 동시에, 동 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軍縮을 추진하되, 다음과 같은 原則에 입각하여 군축협상을 진행한다. 첫째,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공격형 무기를 우선 감축한다. 둘째,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환한다. 셋째, 同數保有原則에 따라 군사력을 상호 감축한다(유사 군조직 및 예비전력 포함). 넷째, 군축을 감시·보장하는 檢證體系를 확립한다. 다섯째,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후 적정 군사력 규모를 감안하

여 협의·결정한다.

한편 군축협상과정에서 북측이 주한미군 감축·철수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인 바, 한·미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段階的 減縮計劃을 마련하되, 구체적 실행은 남북간 군축협상 진전상황과 연계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한·미·중 또는 남북한·미·일·중·러가 참가하는 多者間 安保對話를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군비통제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韓·中, 北·美 交叉不可侵協定 체결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중간조치를 모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정세를 안정화한다.

특히 북한이 대미 핵협상과정을 활용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 경우, 한·미와의 입장 충돌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북·미 불가침협정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關聯國의 立場을 조화시킬 수 있는 代案이 될 수 있다. 즉 美國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우회하는 한편,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中國은 군정위 철수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北

韓은 대미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일단 유보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미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입장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제2장에서 논하였듯이 이미 북한도 1994년 12월 북·미 평화협정의 실현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내용은 불명확하지만 이른바 中間段階措置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順次的 接近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첫째, 먼저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에 대한 한·미간의 승의를 도출한다. 둘째,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설명, 중국의 협조·지원을 확보한다. 셋째, 미·중의 대북한 설득을 통해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 필요시 대북한 설득을 위한 일·러의 협조를 요청한다.

한편 교차불가침협정의 締結方式과 관련, ①「선 한·중, 후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 ②「선 북·미, 후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 ③남북한·미·중 4자회담을 통한 2개 협정 동시체결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 한·중, 후 북·미」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나, 북한의 반발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2개 협정 동시체결방안 또는 중국과의 사전합의·확약 후 「선 북·미, 후 한·중」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³⁾

3) 한·중 불가침협정은 수교 이후 체결되는 基本關係條約의 性格을 부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시 북·미 불가침협정 및 한·중 불가침 협정에는 전쟁예방 또는 불가침에 관한 내용, 즉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의 포기, 주권 존중 및 내정불간섭,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 일방이 제3국과 기체결한 조약의 존중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불가침협정은 平和協定과 달리 북·미간의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일 뿐인 바, 法理上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할 수는 없다.⁴⁾ 따라서 불가침협정의 內容에 ①전쟁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②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③유엔군사령부 해체, ④미군철수 또는 감축 등 불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政治·軍事的 問題가 명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북한이 북·미 불가침협정을 平和協定으로 분식·선전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북·미 불가침협정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⁵⁾

여하는 동시에 양국 정상간 또는 외무장관간에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북·미 불가침협정은 양국간 수교 이전에 체결되는 것임을 감안, 양측 전권대표들이 서명·발효하도록 하는 宣言的 性格의 협정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 4) 불가침협정은 현존 질서의 바탕위에서 침략을 예방하는 사전조치로서 영토적·정치적·군사적 기존 상태를 확인·선언하는 협정이나, 平和協定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당사자간의 明示的 合意이다.
- 5) 한·중 및 북·미간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적 보장은 남북평화협정의 이행·실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한반도 平和體制를 구성하는 핵심부분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교차불가침협정은 休戰體制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다. 作戰統制權 환수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을 근거로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문제를 시비하고 있다. 즉 한국이 현재 자기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을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사실과 연계시키고 있다.⁶⁾

물론 작전지휘권 이양사실과 평화협정 당사자성 간에는 논리적으로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서로 연계시키는 것도 법적 타당성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대통령이 作戰指揮權 移讓公翰(public letter)에 의거하여 유엔군사령관에 이양했던 포괄적인 國軍 作戰指揮權(command authority)은 더이상 유엔군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 즉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국군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해 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으로 축소되었고, 그것도 1978년 11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합의된 「軍事委員會 및 韓美 聯合軍司令部에 대한 권한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ombined Forces)에 의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 연합군사령부로 재이양되었다.⁷⁾ 그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던 작전통제권도 여

6) 1995년 2월 24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참조.

7) 이 권한위임사항은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러 계기에 걸쳐 조금씩 환수되기 시작하여 현재 戰時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平時의 모든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되어 있다. 요컨대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1950년 당시 우리 정부가 포괄적으로 이양했던 작전지휘권이 아니며, 그나마 1994년 12월 1일 平時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현재 한·미 연합사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戰時 작전통제권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작전지휘권 또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이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1950년 당시 절차상 유엔의 기관인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法理的으로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國際法人格을 가진 유엔에 이양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에 대해 戰時 作戰統制權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共同防衛機構이지 미국의 一機關이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⁸⁾

셋째, 북한도 한국전쟁기간 동안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에서 승인되었다. 諸成鎬, “韓國軍 作戰權과 그 還元問題,” 국토통일원, 「軍縮 및 軍備統制에 관한 研究」(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 252~263 참조.

- 8)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현재 미군 4성장군으로 보임되어 있으나, 그가 미군으로 보임된 것은 어디까지나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로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또는 사령관)가 미국의 일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사령부라는 한·미 연합방위기구의 長으로서의 法的地位를 향유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諸成鎬, “韓國軍 作戰權과 그 還元問題,” p. 297.

행사하지 못하였다. 즉 1950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은 中國人民支援軍 總司令 彭德懷에게 김일성과 회담하여 「中·朝 聯合司令部」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팽덕회와 김일성은 12월 7일 수일 내에 모든 작전과 전선의 일체 활동을 지휘할 「중·조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서 북한 정부는 後方動員, 訓練, 軍政警備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연합사 아래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와 「조선인민군 참모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彭德懷가 聯合司 司令員 겸 政治委員을 맡기로 하였다.⁹⁾ 이로써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조선인민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완전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미간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협상과정에서의 우리 입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9) 연합사 부사령원으로는 강건의 사망후 1군단장에서 인민군 총참모장이 된 金雄, 부정치위원으로는 전쟁 직후부터 심양에 파견되어 중국인민지원군 사업을 돕고 있던 내무상 박일우가 임명되었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정치부 주임으로 이 일에 관여했던 杜平的 회고에 따르면, 「중·조 연합사」의 결성은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杜平, 「在支援軍總部」, 第2版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1), p. 142;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199에서 재인용.

3. 南北平和協定 체결

가. 當事者資格 확인

(1) 북한 주장의 문제점 반론

북한은 「實質的 당사자론」에 입각하여 북한과 미국이 한국 전쟁과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므로 평화협정도 북·미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당사자론」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실질적 당사자론」은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만든 비정상적 이론으로서 국제법상의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 개념은 본래 法的 概念이므로 평화체제 전환은 당연히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간에 논의되고 체결되는 것이 法理的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¹⁰⁾

둘째, 「실질적 당사자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南北韓이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 공

10) 물론 이것은 平和協定の 當事者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국한된다는 가 또는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국이 평화보장국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國際慣行도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金明基, 「分斷韓國의 平和保障論」(서울: 法志社, 1988), pp. 102~106 참조.

격을 감행한 대상은 남한이며, 주된 交戰當事國도 남북한이었고, 한국전쟁으로 가장 많은 被害를 본 것도 남북한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남북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¹¹⁾ 남북한이 당연히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실질적 당사자론」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觀과 대한민국이 美帝의 植民地라는 대남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북한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적인 正統政府이며, 한국전쟁이 본질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唯一合法政府라는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¹²⁾에 정면 배치된다.

(가) 美國이 當事者라는 주장의 문제점

북한의 「실질적 당사자론」은 정전협정의 서명자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美國人이므로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 서명자의 국적

11) 남북한은 한국전쟁의 원인과 이해당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主人國家(host country)이며 동시에 韓國戰爭의 주된 交戰國(principal belligerent)이었다. Byung-Hwa Lyoo,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umber 2-1986 (73) (Maryla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pp. 54~56 참조.

1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of the 3rd Session, Part I, 1948, 1st Committee (Paris: Palais de Chaillot, 1948), p. 290.

과 당사자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회원국을 구속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보리는 1950년 6월 25일 결의(S/1501)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해 즉각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북한을 원조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불응하자 안보리는 6월 27일 결의(S/1511)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원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S/1588)를 채택하여,¹³⁾ 유엔통합군사령관의 임명을 미국에게 권고하였다. 이

13) 동 결의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무력공격을 가한 것은 평화의 파괴가 됨을 결정하며, 유엔회원국이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동 지역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1. 대한민국을 원조하여 무력침공에 대하여 이를 방위함으로써 동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및 6월 27일의 결의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국민들이 보낸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환영하며,
2.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유엔에 보내 왔음을 유의하고,
3. 전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如斯한 군대와 기타 원조를 미국관할하의 統司司令部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4. 미국이 동 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며,
5. 본 통합사령부는 그의 재량에 의하여 作戰中에 諸參戰國의 國旗와 함께 國際聯合旗를 사용할 것을 승인하며,
6.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통합사령부 지휘하에 취한 활동에 관하여 適宜한 報告書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러한 委任에 따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당시 東京에 주재하던 맥아더(D. MacArthur) 極東軍司令官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¹⁴⁾ 이는 유엔이 常備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직접 어느 나라의 군인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없고, 단지 어느 회원국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¹⁵⁾ 즉 유엔안보리가 직접 특정국가의 특정국민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도 자의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거나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 수 없다. 회원국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등 유엔의 기관으로부터의 受權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보리가 어느 특정회원국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행위에는 法人格을 갖는 국제법주체로서 유엔 자신이 갖는 고유한 권한(유엔 명의의 統合司令部 設置權, 유엔旗 使用權)을 미국에 授權(권한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權限委任에 입각하여 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 보고를 접수하여 심의

14) L.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nited State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 120.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 暫定的으로 유엔통합군사령부(The Unified Command)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미국 국내법상의 절차를 밟아 1950년 7월 25일 유엔군사령부(The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으로 正式 發足하였다.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 18.

15)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 p. 18.

하는 등 간접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⁶⁾

이처럼 유엔군사령관이 미군 장성으로 보임된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하는 기간 동안, 그는 미국(一會員國)을 대표하여 또는 미국의 一機關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의 執行機關(법리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서¹⁷⁾ 유엔을 위해(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군사령부의 長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입각하여 정전협정을 교섭·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署名者(署名機關)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유엔군사령부나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¹⁸⁾

16) 실제로 유엔군사령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報告書를 안보리에 제출하며, 수시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정전기구 무력화(특히 1995년 2월 28일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강제 축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17) 유엔헌장 제2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체결권에 관해서는 金明基, “韓國軍事停戰協定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25권 1/2호 합병호(1980), pp. 64~65 참조; 한편 署名當事者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가 있으나, 국제법상 그러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混同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근거로 미국이 당사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 署名者(signatory)의 國籍問題와 그가 행한 법률행위가 귀속되는 當事者(party)問題를 혼동한 것이라 하겠다.

(나) 韓國이 當事者가 아니라는 주장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를 논의할 경우, 주로 우리측 당사자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그것은 ①미국만이 당사자라는 입장(北韓의 實質的 當事者論), ②한국과 참전 16개국이라는 입장(聯合軍理論), ③유엔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입장(條約法理論), ④한국과 유엔이라는 입장(折衷論) 등의 4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당사자론의 내용과 문제점은 이미 논술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하 3가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첫째,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를 한국과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S/1511)에 입각하여 참전한 참전 16개국으로 파악하는 聯合軍理論이다. 이 견해는 한국군과 참전 16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하였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즉 연합군을 구성하여 전투행위를 수행한 경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연합군에 소속한 모든 교전당사국 군대를 대표하여 정전협정(또는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연합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서명자에 지나지 않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모든 교전당사국이 된다. 그 효력이 모든 교전당사국에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엔군

사령관은 모든 참전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일 뿐이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전쟁에 참가한 모든 交戰國, 즉 한국과 참전 16개국이 된다. 특히 한국의 당사자 자격은 한국이 1950년 8월 14일 韓國軍 作戰指揮權(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기 때문에, 停戰協定 締結權도 이양한 것이며,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을 위해 위임 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聯合軍理論에 입각한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국제법학계의 通說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 경우, 미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미국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북·미 평화협정의 효력(양국간의 전쟁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전환)은 북한과 미국, 양자에게만 미칠 뿐이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그 결과 북·미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그리고 참전 15개국과 북한간에는 여전히 停戰狀態(戰時的 延長)가 지속된다. 요컨대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한반도에는

19) 裴載澁, “南·北韓의 UN加入과 法的 問題,” 『韓國統一政策研究論叢』, 제2권 (1993), p. 19; 柳炳華, “韓國統一에 관련된 몇가지 國際法的 問題,” 『國際法學會論叢』, 제33권 2호 (1988), pp. 8~10; 李長熙, “韓國 停戰協定の 平和體制 轉換을 위한 法制度的 方案,” 李長熙 편저, 『21世紀를 대비한 韓國의 當面課題: 改革, 環境 그리고 統一』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p. 197; 白珍鉉, “休戰協定 體制的 代替에 관한 小考,” 『統一問題研究』, 제3권 4호 (1991), pp. 62~63; 내외통신, “대미평화협정 공세 강화배경,” 주간판, 제943호 (서울: 내외통신사, 1995. 3. 9), p. A2 참조.

여전히 정전협정체제가 존속(따라서 양자는 병존)하며, 전자가 후자를 법적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를 유엔이라고 보고, 정전협정에 대한 한국의 直接當事者性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이는 條約法理論에 입각하여 조약서명자와 법인격을 갖는 조약당사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국전쟁에서 聯合軍理論의 적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즉 법인격을 갖는 국제법주체인 유엔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유엔군사령관은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의 서명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主交戰當事者임에도 불구하고, ①정전협정 서명에 완강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구속되고 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羈束的 同意 意思가 없었으며, ②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대표(대리)하여’(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顯名하지 않았음을 들어, 한국은 정전협정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⁰⁾ 다만 한국은 국군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부 이양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함으로써 정전협정의 間接的 適用對象은 된다고 한다.

셋째,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를 한국과 유엔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이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연합군을 형성하였다는 전

20) 金明基,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pp. 58~60; 한편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정전협정 체결시 그것을 반대하였고, 또 군사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1994년 5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참조.

제위에 입각한 연합군이론과 조약법이론의 折衷論이다. 이 견해는 먼저 聯合軍理論이 2차대전과 한국전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서 동 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補助機關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¹⁾ 동시에 이 견해는 ①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한국이 반대한 사실과 ②한국이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공헌에 의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가운데 유엔군사령관이 서명자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消極的으로 해석하여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그 비판의 내용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한국은 美 대통령특사로 방한한 로버트슨(Robertson) 차관보와의 2주간에 걸친 교섭 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군사경제원조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결국 정전협정 체결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약속하였다.²²⁾

21)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p. 124.

22) 이러한 사실은 1953년 7월 11일자 韓·美 共同聲明,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7월 24일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1953년 7월 2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인된다. 柳炳華, “韓國統一에 관련된 몇가지 國際法的 問題,” p. 9 참조.

이와 관련, 「軍事停戰委員會 便覽」(서울: 국방정보본부, 1986), pp 151~152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만 2개월 앞두고 1953년 5월 27일 한국군 수석대표 최덕신 소장이 포로교환 문제에 관한 유엔군측의 대북한 제안내용이 한국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엔군측 제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한국군 대표는 停戰會談에 일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문을 당시의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해리슨 중장에게 전달하

②유엔군사령관의 한국을 위한 현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序言(전문)에서는 “한국총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총들의 당사자임에 틀림없고, 정전협정의 일방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에서의 교전국인 대한민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동시에 그 적용대상으로 삼으려는 默示的인 意思, 즉 한국과 유엔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하려 한 의도가 표시되고 있다. 한국이 主交戰國이며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한 기타의 군대는 어디까지나 支援軍이라는 점과 정전협정의 전문에서 표시된 동 협정의 目的과 精神에 비추어 볼 때, 유엔군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성을 부인하려 한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였다. 그 결과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군 대표의 적극적 참여는 회담의 최종단계에서 消極的 參與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53년 6월 1일 한국군 대표단은 최덕신 소장을 수석으로 하고, 이호 육군준장, 김일병 해군준장, 김창규 공군준장 등이 각군 대표로 보장되고, 대령으로 진급한 이수영을 연락장교로 하여 문산의 유엔군 기지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비록 한국군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연락장교와 최덕신 소장은 정전협정 서명시 유엔군 총사령관의 확인서명장소(문산극장)에 참전 16개국 대표들과 함께 배석하였다.”

이처럼 정전협정 교섭과정에서 한국군 대표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순전히 교섭과정에서 현안을 둘러싼 交渉單位體 어느 일방의 內部問題의 표출이었을 뿐, 쌍방 교섭단위체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것이 한국의 停戰協定 當事者性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③북한도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同意와 保障이 있어야 정전협정에 서명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로버트슨 특사와 정전협정에 관해 합의하고 난 후, 우리측 교섭 실무대표인 해리슨(Harrison)이 1953년 7월 12일 공산측 대표인 남일에게 한국의 정전 동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볼 때, 한국이 정전협정에 구속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려 하는 의사(羈束的 同意 意思)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정전협정의 追後慣行(subsequent practice)도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고자 의도한 사실의 客觀的 證據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즉 첫째, 정전협정 체결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전까지 동 협정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法的 文書였으며, 한국은 동 협정의 적용을 받아 왔고 북한도 이를 默示的으로 존중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정전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 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협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항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이는 한국이 협정 당사자로 협정에 구속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셋째, 1991년 3월 25일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 지난 40여년간 한국군 대표 1명이 동위원회의 유엔군측 대표로 참가하여 왔으나, 이를 문제시 삼지 않았는 바,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의 당사자성을 인정

할 수 있다.²³⁾

이상의 점에 비추어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성을 부정하는 조약법이론이 반론되고 한국의 당사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자를 한국과 유엔으로 볼 때, 미군은 단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군 출신의 유엔군사령관도 미국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機關 資格에서 유엔과 함께 주교전국이며 전쟁이 발발한 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²⁴⁾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미군 4성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당사자라고 하는 주장이나, 한국대표가 서명자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모두 條約署名者와 條約當事者를 혼동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2) 當事者性 확인방안

일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문제시삼아 한국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23) 白珍鉉, “休戰協定體制의 代替에 관한 小考,” 『統一問題研究』, 제3권 4호 (1991), pp. 64~65; 諸成鎬,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p. 119.

24) 한국전쟁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宣傳布告를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는 사실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격 획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였다.

한국의 당사자자격은 앞서 논하였듯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시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마땅히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한국의 당사자자격에 대해 우리 스스로부터 의문을 제기하여 북한이 주장해 온 이른바 실질적 당사자론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당사자임을 확증하는 論理를 바탕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대내외에 설득하기 위해 북한 주장을 반론하는 내용을 세계의 각종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政策을 개발하고 弘報한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한국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간의 긴밀한 共助體制를 유지하고 共同立場을 정립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평화협정 당사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휴전협정 시행기관을 대체하고, 둘째, 유엔을 통해 평화협정 당사자자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유엔군사령관을 한국군장성으로 임명함으로써 休戰協定 施行機關 代替를 추진한다. 즉 북한은 휴전협정 서명자가 유엔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논리에서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동시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주장에 정면 대응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군장성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²⁵⁾

둘째,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을 대리하여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는 논거에서 유엔총회 또는 안보리 決意를 통해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미·중이 한국의 휴전협정 당사자자격을 확인하고 천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나. 南北頂上會談 추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對北韓 經濟支援을 약속하고 반대급부로 북한이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호응해 오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 필요할 경우 대북한 경제지원 내용을 非公開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김일성의 遺訓次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려 할 것인 바,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임할 가능성이 크다.

즉 김일성은 IAEA 탈퇴선언(1994.6.13) 이후 유엔의 對北

25) 1950년 7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S/1588 제4항에 의거하여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다.

韓 制裁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1994년 6월 15~18일 방북한 카터 전 미대통령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6월 2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6월 22일 이를 수락하였다. 그후 6월 28일의 예비접촉과 7월 1~2일의 실무접촉 결과, 남북한은 7월 25~27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김일성의 유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를 통하여 남북간의 현안을 一括妥結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융통성있는 會談形式 추진

당사자해결원칙은 우선 당사자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합의가 있을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當事者原則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간섭의 배제라는 당사자원칙의 취지를 살리면서, 북한 주장과의 타협 가능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평화보장력을 감안한 실효성, 법리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對應策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會談形式은 평화체제 전환(남북 평화협정)과 국제적 보장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과 동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分離接近方式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국이 추인(endorse), 지지(support), 보장(guarantee)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국가가 보장하느냐에 따라 2+2(남북한, 미, 중), 2+4(남북한, 미, 중, 러, 일), 2+UN(남북한, 유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同時解決方式은 남북한 관련국이 동시에 대등한 당사자로 참여하여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참여국에 따라 3자회담(남북한, 미국), 4자회담(남북한, 미, 중), 6자회담(남북한, 미, 중, 러, 일), 20자회담(1954년 제네바회담방식: 남북한, 중, 러, 참전16개국) 등이 있을 수 있다.

국제적 보장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단지 會談形式만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이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한다.

첫째, 우선 分離接近方式에 입각하여 일차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어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 당사자해결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을 남북대화의 場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향적인 中間措置들을 강구·제시한다.

둘째, 만일 북한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에는 同時解決方式도 신중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해결방식을 추진할 경우, 당사자해결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측면이 적지않으나,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만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자회담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평화협정과 국제적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유엔軍司令部 해체 모색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력남침 저지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상태 회복을 위해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 제84호(S/1588)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한국정전협정의 시행기관인 軍事停戰委員會의 유엔측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체제와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북한과 교전했던 참전국의 실질적인 병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더구나 유엔군사령부에는 현재 소수의 인원(300명 이하: 사령부 간부, 연락장교단 및 의장병 등)만이 소속되어 있어 군사전략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의 解體는 한국·미국·북한 등 그 어느

국가도 단독·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法理上 設置機關인 유엔안보리의 決定(해체결의)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정전협정체제와 직결되어 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감시할 기구 설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정전협정 시행기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시 정전협정체제하에서의 유엔군사령부의 협정 감시·이행기능을 어떠한 기관으로 이전·승계시키는 것이 한국의 정치·군사적 이익에 부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代表機關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정전협정 61항에 의거한 수정·증보에 해당하므로 유엔군사령관과 북한측 사령관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²⁶⁾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節次와 方法에 따른다.

첫째, 韓·美間의 긴밀한 협의하에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합의한다. 즉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국인 미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주둔하는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유엔안보리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26) 兩者條約의 경우, 조약의 일방 당사자가 소멸하면 조약은 종료되지 만,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도 정전협정이 자동적으로 失効되거나 終了되는 것은 아니다. UNC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는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존속과 UNC 해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북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측과의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구체적인 대체기관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채택하여 정전협정에 첨부한다. 이 경우, 대체기관은 남북당사자해결원칙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같은 한·미 대표기관보다는 韓國軍 單獨의 代表機關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흡수하도록 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유엔안보리 決意를 통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 이 경우, 유엔안보리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는 남북한과 미국의 합의를 유엔안보리가 추인하는 성격의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유엔사무국은 유엔군사령부의 國際聯合旗 사용을 정지하고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는 참전국 연락장교단을 철수하는 등 해체에 필요한 부수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²⁷⁾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유엔군사령관 겸직을 면하고,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한 지원인력을 철수해야 한다. 즉 현

27) 한편 유엔사의 존재는 일본내 미군기지 사용권과 관련이 있다. 즉 1951년 9월에 체결된 美·日 安全保障條約과 이에 따른 에치슨·요시다 交換公文은 주한유엔군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고 주한유엔군 철수후 90일 이내에 동 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일본내 6개 基地使用權이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기지사용권에 대한 美·日間의 새로운 合意가 필요하다. 白珍鉉, “休戰協定體制 代替에 관한 小考,” pp. 70~71 참조.

재 효율적인 한·미 연합방위체제 유지를 위하여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은 유엔군사령부 및 韓·美 聯合軍司令部의²⁸⁾ 보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사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²⁹⁾ 따라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존속 및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조정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유엔군사령부 보직 겸임을 해제하는 조치만 취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權限委任事項」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交換覺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28)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권한위임사항」(1978.7.27)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交換覺書」(1978.10.17)에 따라 설치되었다.

29) 「韓·美 聯合軍司令部 設置에 관한 交換覺書」중 韓國側 提案覺書에 의하면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권한위임사항이 1953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에서 명되고 1955년과 1962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한국 측 정책사항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며, 또한 동 약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장군으로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여 왔는 바,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북한의 駐韓美軍 철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韓美 相互防衛條約 제4조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派韓되었는 바,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다. 따라서 양자를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는 부당한 것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安定者(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전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VI. 韓半島 平和의 國際的 保障方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으로는 ①美國에 의한 보장방안(2+1), ②美·中에 의한 보장방안(2+2), ③한반도 周邊4國에 의한 보장방안(2+4), ④한국전쟁 參戰16個國 및 中·러에 의한 보장방안, ⑤東北亞 安保協議體에 의한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첫째, 각 보장방식과 유사한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개별 사례에서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示唆點을 살펴본다.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각 사례의 배경과 참여국의 의도 그리고 평화보장 사례의 의의 등을 분석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 방식들에 대한 長·短點을 분석·평가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평가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代案을 제시한다.

1. 美國에 의한 보장방안 (2+1)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중동평화협정

中東平和協定은 캠프데이비드 협정(1978. 9)과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1979. 3)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각 협정의 배경과 의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 및 목표는 세계강국으로서 이 지역의 교통·통신로의 자유로운 이용, 중동지역의 原油 供給確保 및 이스라엘의 安保와 生存權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은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 親美 아랍국들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소련의 대중동 침투 견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對中東 戰略概念에서 두가지 상반된 견해로 인해 정책집행에 동요를 보이고 있었다. 즉 중동분쟁을 동서대립 개념으로 보아 對蘇牽制를 위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중동분쟁을 미·소대립 차원 보다는 지역에 내재하는 갈등요인이라는 제한적인 해석을 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있었다.¹⁾

한편 카터(Jimmy Carter) 미 대통령은 단계적·점진적 해결(특히 키신저 구상)보다는 포괄적·영구적 해결을 추구하고, 東西間 對立보다는 地域紛爭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중대한 경제적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중동정책을 추진하였다.²⁾

1) Alfred L. Atherton, Jr., "Arabs, Israeli and Americans: A Reconsideration," *Foreign Policy*, vol. 62, no. 55 (Summer 1984), pp. 1194~1195.

2) 이에 따라 카터 행정부는 팔레스타인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집트와 사우디 등 親美·穩健 아랍국들을 중요시하고, 이스라엘의 戰略的 價値를 상대적으로 경시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는 바, 첫째,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얻은 영토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아랍·이스라엘간 완전한 關係正常化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셋째, 팔레스타인의 領土權을 인정·지지한다는 것이었다. William B. Quandt, *Camp*

카터 대통령은 1977년 10월 1일 소련과의 공동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아랍권내에 신뢰를 구축하였다. 이에 대해 사다트(Mohamed Anwar El Sadat) 이집트대통령은 1978년 카터 대통령을 對中東外交의 동반자로 간주, 상호 협력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미국은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의 頂上會談인 캠프데이비드(Camp David) 협상을 구상하게 되었다. 또한 카터 대통령은 아랍·이스라엘간의 협상 실패로 인한 중동전 재발 및 이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原油)과 미·소 軍事對立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중동평화협상을 성공시켜 자신의 국내정치기반 강화에 활용하고자 하였다.³⁾

한편 베긴(Menachem Begin) 이스라엘수상은 확고한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아랍과의 협상을 추구하였으며, 아랍과의 전쟁을 피하고 國防費 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이집트와의 평화조약 체결 및 관계정상화를 모색하였다. 이스라엘은 국제회의 등 포괄적인 中東平和協商보다는 개별적·쌍무적인 협상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집트와의 雙務的 平和條約 체결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베긴 수상의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은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

Davi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80), chapter 3
참조; Steven Spiegel, "The United States and the Arab-Israeli Dispute," in K. A. Oye, D. Rothchild and R. J. Lieber, eds., *Eagle Entangled* (New York: Longman, 1979), p. 348.

3) 카터 대통령은 對아랍권(사우디 및 이란) 武器販賣와 파나마 조약 체결로 인한 國內人氣 하락을 만회하기 위하여 캠프데이비드 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입장에 처해 있었다. Quandt, *Camp David*, chapter 7 참조.

안, 가자지구 및 東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⁴⁾

사다트 대통령의 立場은 1972년 나트세르(Gamal A. Nasser) 전 대통령의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전쟁 종전처리에 분주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는 1973년 시리아와 연합하여 對이스라엘 戰爭을 일으켰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종식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소련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中東平和協商을 모색하게 되었다.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직접접촉 및 미국과의 협상 추진을 위하여 1977년 11월 정치생명을 건 예루살렘 방문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⁵⁾ 사다트 대통령은 미국이 포괄적인 平和案을 제출하면 우선 미·이스라엘과 합의하여 이스라엘 점령지문제나 팔레스타인문제 해결을 위한 基本原則을 마련하고, 그럴 경우 궁극적으로 다른 아랍국의 협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기본원칙이 합의되면 이집트·이스라엘간에 平和條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것이고, 이 경우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4) Ibid., chapter 7 참조.

5)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종식과 화해를 추구한 주요 이유로는 첫째, 주변 아랍 산유국의 富와 대비되는 이집트 經濟貧困에 대한 개인적인 분개, 둘째, 파탄상태에 처해 있는 이집트 경제의 재건, 셋째, 이집트인들의 평화 구축에 대한 기대 상승에 따른 이스라엘과의 관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ibid.*, chapter 6 참조.

조약 체결에 대한 아랍국측의 비판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미국·이스라엘·이집트는 中東의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캠프데이비드 협정(1978. 9)에 합의하였으며, 이 협정은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었다.⁶⁾

6)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42호와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주변 아랍국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서문), 지역안보를 위한 國際平和維持軍 주둔 및 제반 군사조치를 취한다. 둘째,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중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스라엘·아랍국간 平和條約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A-4). 셋째,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문제와 팔레스타인문제는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팔레스타인의 네 당사자 대표간 협상으로 해결한다(A-1). 넷째, 이집트·이스라엘은 분쟁의 平和的 解決을 지향하고,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후 3개월 이내에 이집트·이스라엘간 平和條約을 체결하며, 다른 아랍국들도 이스라엘과 平和조약을 체결하도록 초청한다(B-2). 다섯째, 미국을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협상과 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C-5). 특히 동 협정에서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합의 아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5년간의 住民自治制를 실시하는 과도조치를 취하고, 民選自治政府가 수립되는 경우 이스라엘 軍事政府 및 民間行政機構를 철수시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요르단정부를 초청하기로 하였다(A-1-(a)). 둘째 단계에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민간정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군을 특정지역에 배치하며, 강력한 地方警察 창설과 아울러 국경안보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요르단간 合同巡察軍을 결성하기로 하였다(A-1-(b)). 셋째 단계에서는 자치정부 수립시부터 최대한 3년내에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최종적 위상정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참가자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및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대표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A-1-(c)).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한편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1979. 3)은 중동평화의 포괄적인 해결이라는 캠프데이비드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집트·이스라엘 양국과 미국 모두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캠프데이비드 협상을 전후하여 이란혁명 등 中東情勢는 급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터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기본구상인 이스라엘·아랍국들간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만이라도 조속히 타결하고자 하였다.⁷⁾

캠프데이비드 협정(1978. 9. 17)과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1979. 3. 26)은 중동평화를 제도화하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仲裁努力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이해일치 결과로 체결되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중동평화의 포괄적인 해결과 향후 이스라엘과 아랍국들간의 평화정착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틀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 no. 6, November 1978, pp. 1466~1469.

- 7)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문제의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준수한다(서문). 둘째, 이집트·이스라엘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한다(1조 1항). 셋째, 이스라엘은 군과 민간인을 시나이반도로부터 철수시킨다(1조 2항). 넷째, 相互 領土·主權 尊重과 분쟁의 平和的 解決을 약속한다(3조). 다섯째, 양국은 양국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에 합의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없으면 유엔 평화유지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4조). 여섯째, 이스라엘의 자유로운 수에즈 운하 航海를 보장하고 양국 연안 公海上의 自由航海에 대해 상호 보장한다(5조). 일곱째, 각 조약 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7조).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 2, March 1979, pp. 362~366.

을 마련하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간 평화조약 체결을 가져왔다. 또한 아랍·이스라엘간의 주요 분쟁요인이었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自治權 보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냈다. 또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은 이집트·이스라엘관계를 정상적인 平和關係로 전환시킴으로써 사실상 아랍·아스라엘간 中東戰 재발을 저지할 수 있었으며, “아랍·아스라엘의 관계에서 영토 및 안보문제는 多者間 協商보다는 각 아랍국과 이스라엘간의 雙務協商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스라엘 입장을 관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兩協定 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양협정의 保障者로서 공동 조인함으로써 중동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일한 仲裁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⁸⁾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미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집트·이스라엘간 직접협상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카터 대통령의 仲裁는 협정 성공의 관건이었다.⁹⁾

그러나 협상과정에서의 미국 역할도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즉 첫째, 미국은 仲裁役割을 수행함에 있어 에너지문제

8) Ibid., pp. 257~258.

9) 協商過程中에서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수상은 상호 會同과 對話를 기피할 정도로 적개심이 강했으나, 카터·사다트간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감에 따른 카터 대통령의 설득 및 비공식적인 협상 등이 협상 성공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사우디 중시와 이스라엘 경시라는 對아랍 편향으로 政治的 均衡을 상실하고 있었으며,¹⁰⁾ 둘째, 미국은 중동지역정세 악화와 미국내 선거일정으로 인해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협상초기에 구상하였던 팔레스타인문제 및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변 아랍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¹¹⁾ 셋째, 이러한 아랍국가들의 참여 유도 실패는 협정 성패를 가름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동 협정은 관련 당사국인 요르단·시리아·PLO의 참여가 배제되고 이집트가 이들을 대표할 指導力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과적으로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이집트의 對이스라엘 평화조약 체결과 對美關係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 향후 중동의 포괄적인 平和定着(아랍권·이스라엘간 분쟁해결)

10) 미국은 이스라엘의 주요 우방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익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입장을 이스라엘에게 강요해 나갔다. 즉 미국은 이스라엘이 領土와 平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이스라엘의 이익은 아랍측의 호의적인 정책이 있어야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양보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팔레스타인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이 없는 한, 이스라엘-아랍 紛爭과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Spiegel, "The United States and the Arab-Israeli Dispute," p. 355.

11) 특히 주변 아랍국들은 1978년 11월 5일 바그다드 아랍정상회의에서 보여주듯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PLO의 궁극적인 位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自主權(self-determination)의 보장없이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을 실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중동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주는 示唆點과 관련, 중동평화협정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적대관계가 일시에 영구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이집트·이스라엘 양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분쟁 당사국보다 압도적 국력을 보유한 강대국인 미국이 보장자로서 중재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이집트·이스라엘 간 直接協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敵對關係를 유지해 온 남북한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제3의 세력, 특히 미국의 仲裁를 통한 남북한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북·미 관계개선이 급진전될 경우 이 방안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해 유용한 방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2+1」 보장방안의 장단점

「2+1」 방안은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이 남북한의 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면서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長點을 안고 있다.

그러나 「2+1」 방안의 短點은 첫째,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중국이 배제됨으로써 「2+1」 방식에 반대할 것이므로 보

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미국이 남북한 평화협정의 中立的 保障者로서 참여하게 될 경우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제적 보장자의 數가 적을수록 보장자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2. 美·中에 의한 보장방안(2+2)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1988. 4)은 내전 당사자에 대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소라는 초강대국이 내전에의 불개입과 지원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내전 격화를 막고 평화를 회복시키려 노력한 협정이다.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과 러시아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독립을 유지해 왔던 아프가니스탄은 1947년 영국이 인도로부터 철수한 후에도 미·소간 勢力均衡 속에서 緩衝的 地位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¹²⁾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아프가니스탄

12) 1950~60년대 걸프지역 안보는 미·영 共同管理(Anglo-American Condominium)에 의해 유지되었다. 미·영의 安保公約(Bagdad Pact)과 그 후신인 CENTO를 지원)과 軍事展開로 Northern Tier States들(터키, 이란, 이라크)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걸프국가들을 지역적 또는 국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였다. 1960년대에도 걸프지역과 아프가니스탄지역의 안보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종말시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Ralph H. Magnus, "Afghanistan and Gulf Security: A Continuing Relationship," in Robert G. Darius, ed.,

지역에서는 영국의 철수로 야기된 세력공백을 메우지 않았으며,¹³⁾ 아프가니스탄은 대외적으로 非同盟의 입장을 취하여 東西 兩陣營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다.¹⁴⁾

1968년 영국 정부가 수에즈 이동지역에 대한 安保公約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을 때,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견지하여 영국 철수로 인해 야기된 걸프지역의 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다. 반면 소련은 1979년 6월 말까지 「相互均衡減軍會談」(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 MBFR) 등을 통해 미·소간 데탕트 분위기를 지속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양에서 원조의교나 전복 혹은 군사적 지원을 통해 걸프지역에서 서방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위협하고 자신의 세력확장을 시도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1978년 4월 아민(Hafizullah Amin)과 타라키(Nur Mohammed Taraki)가 주도한 칼키(Khalqi)파 쿠데타 이후 급속히 증대하였다.¹⁵⁾ 소련은 쿠데타 이후 신속히 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하고 350명의 군사고

Gulf Security into the 1980s: Perceptual and Strategic Dimension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p. 7~12.

13) 미국은 자신의 방어선이 파키스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ibid.*

14) *Ibid.*, pp. 13~14.

15) 1973년 쿠데타로 전제군주를 무너뜨린 다우드(Da'ud)는 소련 고문관이 조직한 두 공산주의 정파(Khalqi, Parcham; 이 두 정파는 1977년 7월 「아프간 인민민주당」(PDPA)을 창설하였으며, 명목상 단일 정당의 지도자는 타라키이고 수석 대표는 아민이었다)에 의해 1978년 4월 가족과 함께 암살된 후, 아프가니스탄은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이 되었다. 이 쿠데타로 타라키는 대통령이 되었다. *ibid.*, pp. 16~18.

문단을 수개월내에 1,000명으로 증대시키는 등 공산주의 정당과 군대 간부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의 보호령으로 하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保護領化 計劃은 제2차 석유위기와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내분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대다수 국민의 불만 가중으로 실패하였고,¹⁷⁾ 1979년 말에는 「聖戰」(Jihad)으로 불리우는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내전으로 발전하였으며, 반군인 무자히딘(Moudjahidin)이 전국 28개 省 가운데 21개 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反蘇趨勢를 고양시키게 되었다. 첫째, 데탕트 종료를 가져왔고, 유엔총회에서 소련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소련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이 증폭되었다. 둘째, 回教圈과 제3세계로부터 소련이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⁸⁾

16) 소련의 대아프가니스탄 保護領化 시도에 대해 서방은 특별히 항의하지 않았다. 즉 미국과 걸프지역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신정권의 정책이 공식적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이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회교국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진적인 정책이나 소련 이익에 지나치게 부합되는 정책 추진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ibid.*, pp. 14~25.

17) 통합주의적인 청년 운동이 공산주의자들과 反종교주의자들에 대한 반발세력으로 설립되었고 이란의 회교 혁명의 영향으로 고무되어 격렬하게 발전되어 갔다. Joseph Collins, "Soviet Policy toward Afghanistan," in Robbin F. Laird, ed., *Soviet Foreign Policy* (Monpellier: Capital City Press, 1987), pp. 198~201.

18) 소련군이 걸프지역으로부터 몇 백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및 동부 국경까지 진출함으로써 걸프지역국가들은 소련에

셋째, 미국은 이 지역에 주요艦隊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신속배치군(Rapid Deployment Force: RDF)을 사용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83년 11월 퍼싱II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여 소련에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¹⁹⁾

소련은 현대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서기장 등장때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였으며, 소련 원정군은 증파되어 120,000명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8년 2월 8일 아프가니스탄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발표하였다.²⁰⁾ 소련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하였던 것처럼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80년 1월 이슬라마바드의 회교국 외상회의(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특별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소련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특히 걸프지역내 소련의 동맹국인 이라크도 이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가 창설되어 지역안보 조치들이 장구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간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ibid.*; Marvin G. Weinbaum, "Pakistan and Afghanistan: the Strategic Relationship," *Asian Survey*, vol. 31, no. 6 (June 1991), pp. 496~511.

19) Collins, "Soviet Policy toward Afghanistan," p. 201.

20)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결정은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기초한 외교정책에 입각하고 있으나, 소련이 철군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 動機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을 통해 미·소간 공존적 화해 분위기를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핵군축 등에서 타협을 이루기를 원하였다. 둘째,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중·소관계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의 철수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으로 인해 레이건 美 행정부가 미국 여론과 의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적극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철수 명분을 얻은 후 철수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고르바췌프의 共存的 和解路線에 대하여 1970년대 초와 같은 포괄적인 화해 모색보다는 사안별로 대응해 나간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소 양국의 동시 원조단절을 協商條件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일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사태 해결에 있어 평화적 이미지를 독점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동시 원조중단이라는 협정체결 조건을 철회하고 협정에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合意를 계기로 미·소관계 증진 및 여타 地域紛爭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였다.²¹⁾

하여, 소련은 소련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대한 미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특히 회교반군은 7개파의 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 미국의 원조가 감소되는 경우 자체 분열하여 세력이 현저히 약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넷째,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고르바췌프는 「신사고」를 대외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부각시킴으로써 民主化 改革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될 1988년 6월 임시 당대회에서의 국내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다섯째, 아프가니스탄문제가 소련의 베트남化되어 있었다. 즉 소련은 레이건 행정부의 대폭적인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대한 군사원조로 인하여 소모전화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치르면서 15,000~20,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같은 병력 사망으로 소련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Oliver Roy, "The Lessons of the Soviet/Afghan War," *Adelphi Papers*, no. 259 (Summer 1991), pp. 32~34.

21) Ibid., pp. 34~37.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간 相互 不干涉 및 不介入協定,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간의 피난민 귀환에 관한 협정, 미·소의 내정간섭과 개입 포기 및 國際的 保障에 관한 선언, 미·소·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4개국간 협정 등 4개의 協定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특히 미·소의 內政干涉과 介入 拋棄 및 國際的 保障에 관한 선언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부문제에 대한 干涉 및 介入 禁止를 규정한 동시에,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간 內政 不干涉 합의를 존중하고 여타 국가들도 이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엔사무처 대표 조정하의 소련군 철수 및 상기 3개 문서와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미·소·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4개국간 협정에서는 소·아프가니스탄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소련군이 1988년 5월 15일부터 段階的 撤收를 시작하되, 병력의 절반은 1988년 8월 15일까지 철수하며 9개월내에 철수를 완료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6조). 또한 유엔의 協定履行 監視

22)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간 相互 不干涉 및 不介入協定은 우선 상호주권·독립·영토보전·비동맹성 존중 및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2조 1항). 아울러 동 협정은 체결 당사국이 자신의 영토에서 상대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용병 및 테러 집단을 훈련시키거나 무장시키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2조 12항).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간에 체결된 유엔 고등위원회 원조하의 피난민 귀환에 관한 협정은 난민들의 자유귀환, 주거 선택 및 자유이전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2조), 귀환 과정을 조직·감독하기 위한 高等委員會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4조).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XVII, no. 3, May 1988, pp. 577~595.

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유엔감시단을 파견한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의 意義를 평가해 보면,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은 미국과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대한 不干涉 및 不介入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보장함으로써 소련군 철수를 도와주는 '주변 3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의 국제적 보장방안'이었다. 즉 국제법상 침략자이면서 교전자인 소련을 共同 保障者로 인정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군사적 패배를 만회시켜 주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²³⁾

그러나 서남아시아에서 미국의 對蘇 방어선은 파키스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목표는 소련이 소련군 철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中立과 非同盟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었고,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반군문제는 미국의 목표에서 제외되었다.²⁴⁾ 아프가니스탄 반군(Moudjahidin)들은 협상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동 협정을 비난하고 「聖戰」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⁵⁾

23) François Puaux, *La Politique internationale des années quatre-vingt: De Reagan à Gorbatchev*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pp. 258~264.

24) 숄츠(George Shultz) 미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유로미사일 조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이 취하고 있던 對蘇 宥和政策과 상충되지 않기를 바랐으므로 반군에 대한 원조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25) 제네바협정에 의거하여 1989년 2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함에 따라 무자히딘 반군은 아프간 나지블라 정부와의 聯立政府 구성을 거부하면서 臨時政府를 수립하였고 군사적 해결을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군과 반군간의 뚜렷한 진전없이 교착된 內戰狀態에 빠져 있으며, 반군측은 정부군에 비해 분열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叛軍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장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²⁶⁾ 결과적으로 이 협정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였고 內戰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示唆點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에서

추구하여 나지블라 정부군과 교전을 계속하였다. Laurent Zecchini, "Afghanistan: la mise en oeuvre de l'accord de Genève," *Le Monde*, Mardi 26 avril 1988, p. 37.

- 26) 그 이유는 첫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소련군 철수이후 미국측은 개입과 지원의 명분이 약화되어 의회로부터 원조 승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반군측은 정부군과 대항함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소련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측의 군사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해 온 人民民主黨(PDPA)체제는 이 체제 존립에 이해를 같이하는 단일세력을 형성한 반면, 반군 세력은 종교적·부족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외무부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카블에 거주하는 3만명이 넘는 人民民主黨 지지자들이 무장되었으며, 정부군내에는 4만명의 당원들이 있고 병참 및 의료부대에는 5천명의 PDPA 女黨員들이 있다. 셋째, 아프가니스탄 정부측은 반군측에 비해 단일세력이라는 강점 이외에도 구소련에 의해 훈련되고 상당한 전투 경험을 쌓은 장교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구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T55 탱크, 130mm 야포, SAM 2, SAM 3 미사일, 장갑차, 로켓포, Mig 21, Mi 3·Mi 17 헬리콥터, 空對空 미사일 등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叛軍에 의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Selig S. Harrison, "La lente implosion de l'Afghanistan," *Le Monde Diplomatique*, mars 1991, p. 15; Shah M. Tarzi, "Politics of the Afghan Resistance Movement: Cleavages, Disunity and Fragmentation," *Asian Survey*, vol. 31, no. 6 (June 1991), pp. 492~495.

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주체인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협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미·소·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間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의 實效性(분쟁의 평화적 종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완전한 참여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2+2」 보장방안의 장단점

「2+2」방안의 장점은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는 방식으로 법리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보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北韓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 보장방식 가운데 「2+2」방식을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 차원에서 미국의 참여·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보장자로서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대미 견제 및 북한의 국익을 증진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外勢介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2+2」방안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보장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평화보장력도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日本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여타 주변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

에 일본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보장에는 반대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보장에 일본이 배제될 경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經濟·外交的 協調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美·中·日·러에 의한 보장방안(2+4)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로카르노 조약

로카르노 조약(1925. 10)은 베르사이유 조약 제42조와 제43조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라인란트 非武裝地帶에 대한 현상유지로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3국중 한나라가 라인란트에 대하여 약속을 어기고 침략행위를 할 경우, 侵略國 및 被侵略國을 제외한 나머지 1개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즉각적으로 被侵略國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카르노 체제에서는 로카르노 조약 외에 주변국들이 중재조약 및 원조조약 형식으로 참가함으로써 분쟁재발 방지를 이중으로 보장하려고 하였다.

로카르노 조약의 배경과 관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부터 1923년까지 독·프랑스간의 관계와 유럽의 국제정치 상황은 독일의 賠償支拂問題와 프랑스의 루우르지방 점령 등으로 계속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루우르지방 점령에 이르는 시기까지 프랑스는 國際聯盟이라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독일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체제를 형성하여 프랑스의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동맹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동

맹 예상국이었던 영국이 유럽대륙에 대한 전통적인 고립정책을 추구함으로써 英·佛同盟은 실패로 돌아갔다.²⁷⁾

프랑스에서는 1924년 5월 對獨 강경정책을 견지하고 있던 프앙카레(Poincaré) 내각이 실각하고 베르사이유 조약 실천에 있어 독일에 보다 타협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에리오(Herriot) 내각이 등장했다. 에리오 내각은 독일의 배상문제를 일단 마무리짓는 도우즈案²⁸⁾에 동의하였으며, 독일의 자발적인 무장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독일과 타협하고 관계개선을 이루려고 하였다.²⁹⁾ 한편 독일에서도 1923년 8월 연합국에 대해 受動的 抵抗政策을 포기하고 가능한 의무 이행으로 연합국의 호의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베르사이유 조약을 서서히 독일에

27) René Albrecht-Carrié,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London: Methuen, 1967), pp. 406~411.

28) 도우즈案은 1924년 4월 도우즈(General Dawes)위원회가 작성한 독일의 연합국에 대한 배상계획을 담은 보고서이다. 내용은 5년간 유효한 잠정조치로서 독일은 5년간에 걸쳐 150억 금화마르크를 전승 연합국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일 철도나 산업을 담보로 삼고 있었다. 도우즈案 실행으로 프랑스는 루우르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1929년 6월 작성된 영(Owen D. Young)案은 도우즈案을 대체하여 독일의 배상을 규정한 계획안으로서 도우즈안에 비해 독일의 배상액을 경감해주었으며 배상기간도 59년간(1988년 만기)으로 완화해 주었다. 또한 독일의 배상 이행여부와 연합국(특히 프랑스)의 미국에 대한 배상을 연계시킴으로써 프랑스 등 연합국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었다. 독일이 영(Young)案을 받아들임으로써 프랑스는 1930년 라인란트에서 철수하였다. *ibid.*, pp. 398~400, 443.

29) 브리앙(Aristide Briand) 외상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독일이 「유럽統合機構에로의 길」을 택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도 독일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Régis Benichi, ed., *Le Livre de L'Europe* (Paris: Stock, 1990), pp. 45, 118.

게 유리하게 개정하려 하는 스트레제만(Stresemann) 내각이 등장하였다. 독일은 경제부흥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교면에서 융통성있게 처신하였고 프랑스와의 화해를 모색하였다.³⁰⁾ 결국 독·프랑스 양국은 양국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양국 국경 및 라인란트 문제를 不可侵保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화해 분위기를 성숙시키려고 하였다.

로카르노 조약의 내용과 관련, 로카르노 체제는 3개 條約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국간 라인란트에 대한 現狀維持政策을 확인하는 相互保障條約(로카르노 조약 혹은 라인 조약)이고, 둘째는 독·벨기에, 독·프랑스, 독·폴란드, 독·체코슬로바키아간 4개의 仲裁裁判條約이며, 셋째는 프랑스·폴란드,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간 相互援助條約이다. 이 중에서 라인란트에 관한 相互保障條約이 로카르노 체제의 핵심이다.

5개국간 상호보장조약인 로카르노 조약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 첫째, 체약국 전부는 집단적이고도 개별적으로 독·프랑스간 및 독·벨기에간의 국경 유지와 不可侵을 보장하고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라인강 동방 50km 以西 독일영토의 非武裝化를 보장한다(1조). 둘째, 독·프랑스 및 독·벨기에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 침략, 또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2조). 그러나 2조에서는 예외

30) Louis Dollot, *Histoire Diploma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61), pp. 67~72.

31) Friedrich Berber, ed., *Völkerrecht Dokumenten-sammlung* (München und Berlin: C. H. Beck, 1967) pp. 1662~1673.

적으로 정당방위권 행사, 국제연맹 규약 16조를 수행하는 행위 그리고 국제연맹 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에 기초하는 행동 등을 위한 武力行使를 예외로서 인정하였다(2조 1-3항). 셋째, 독·프랑스 및 독·벨기에는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3조). 넷째, 체약국의 일국이 제 2조의 위반을 주장했을 경우 그 국가는 즉시 연맹이사회에 제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가 위반을 인정했을 경우 체약국은 각자 피해국을 원조한다(4조). 다섯째, 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독·프랑스·벨기에 가운데 어느 1국이 분쟁의 평화적해결에 부탁하는 것을 거부하던가, 부탁하더라도 중재적 또는 사법적 결정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제2조 혹은 비무장화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4조가 적용된다(5조).

로카르노 조약의 意義 및 評價와 관련, 1925년의 로카르노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대한 전쟁책임 추궁과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프랑스군대가 독일 루우르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프랑스·독일·벨기에 3국간 國境認定, 전쟁수단의 포기 및 仲裁協定을 통한 분쟁해결을 약속하고 침략국(독일) 및 피침국 이외의 1개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이를 보장한 협정이었다.

1925년 로카르노조약으로 프랑스는 독일이 자신에 대해 報復戰爭을 시도할 경우 영국의 軍事的 支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반면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가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양

국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다. 한편 독일도 이 조약 체결로 1926년 9월 國際聯盟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라인란트에 진주하고 있던 聯合軍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로카르노 협상에서 영국이 맡은 역할, 즉 라인란트에 대한 영국의 보장 책임에 만족하고 있었다. 영국은 라인지역에 국한하여 보장하고, 독·폴란드간 東部國境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음으로써 유럽국가들과의 同盟에 깊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영국의 전통적인 대유럽정책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³²⁾

결국 로카르노 조약으로 프랑스·독일·벨기에간 1919년 國境이 공개적으로 승인·보장받게 되어 유럽상황은 일단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로카르노 체제는 히틀러에 의해 붕괴되었지만 당사자간 不可侵義務를 복수의 제3국들이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國際的 平和保障의 한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에 대한 示唆點과 관련,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로카르노 체제를 원용한 주변강대국들의 保障條約 체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는 방안은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로카르노 체제식의 保障方案이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다음의 세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 특히 독·프랑스간 안전판이었던 라인란트에 대한 침략을 베르사이유 체

32) Michel Korinman, *Quand l'Allemagne pensait le monde* (Paris: Fayard, 1990), pp. 165~168.

제의 타파로 간주하여 라인란트의 非武裝과 國境을 보장하는 로카르노 조약을 주변 열강이 체결했던 것과 같이, 남북한간의 非武裝地帶 침범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침략 방지를 보장하는 相互 保障條約을 주변 열강간에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카르노 조약에 4개의 仲裁裁判條約이 있었던듯이 미·일·중·러가 참가하는 중재조약을 체결하여 남북한간 분쟁을 仲裁하도록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로카르노 체제에서도 同盟關係의 중요성이 內在(독일의 프랑스 및 벨기에에 대한 침공시 영국의 지원) 또는 공공연히 존재(프랑스·폴란드간,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간)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韓美 同盟體制와 북·중간 군사적 지원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2+4」 보장방안의 장단점

「2+4」방안의 長點은 첫째, 「2+4」방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 당사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러를 한반도 평화보장자로서 포함시킴으로써 美·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적 공헌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2+4」방식은 보장국들 가운데 특정 쌍무관계가 약화되었을 경우에도 여타 국가가 한반도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분쟁발생시 분쟁의 조정·중재가 「2+2」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2+4」 방식은 모든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역내국가들은 「2+4」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내 군사적 신뢰구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역내 군축문제를 다루는 小地域的 集團 安保機構로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4」 방안의 短點은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개입을 인정·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방식은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개입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4」 방식은 한반도 평화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外勢가 개입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셋째, 한국은 주변4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보장 및 통일과정상의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이 증가한다.

4. 參戰16個國과 中·러에 의한 보장 방안(2+16+2)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베트남 평화협정

베트남 평화협정(1973. 1)의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닉슨(Richard M. Nixon)이 베트남戰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

고, 취임후 그는 미·소간의 데탕트정책과 닉슨독트린(1969.7)에 따른 「베트남戰의 베트남化」를 추진하여 撤軍政策을 시행하였다.

당시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은 베트남에서 휴전을 실현시키고 남베트남에 안정된 정치·군사조직을 구축한 후 남아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미국은 차선책으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장악하는 시기를 1972년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상당기간을 연기시킴으로써 남베트남 패망이 미 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남베트남 패망의 책임을 미국이 아닌 남베트남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다.

결국 미국의 주 관심사는 남베트남의 생존보다는 닉슨 행정부의 연임이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상과정에서 남베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홀하였다.³³⁾ 미국은 베트남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休戰 및 平和協定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철수의 구실만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반면 북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협상에서 강경자세로 일관하였으나 미국의 맹폭격과 증·소의 압력으로 미국과의 協定文案에 합의하였다.

결국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反戰輿論이 미국전역에 확산되자 부진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통해 압력을 가하였으

33) Ibid., pp. 385~389.

며,³⁴⁾ 1972년 7월 18일 베트남 평화협정 文案을 작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베트남 평화협정의 내용과 관련, 베트남 평화협정은 전문, 9장, 23조 및 4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체결형식상 베트남평화협정은 미국과 북베트남이 假調印(1973.1.23)한 후,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4개 당사자가 조인(1973. 1.27)하는 二重調印 방식을 따랐다.³⁵⁾

또한 베트남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서는 軍事共同委員會, 國際監視統制委員會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회의(제6장)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國際(休戰)監視統制委員會는 1,160명의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및 폴란드인으로 구성되며, 국제회의가 결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휴전

34) 소련은 베트남문제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랐으며, 이것이 미·베트남간 협정을 성공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공헌하였다. Alvin Z. Rubinstein, "Regional Case Studies of Soviet Foreign Policies: Western Europe," in Kurt London, ed., *The Soviet Union in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p. 98~99.

35) 베트남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장치를 규정한 동 협정 제6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4者軍事共同委員會와 兩國軍事共同委員會로 세분되어 있는 바, 4자군사공동위원회는 평화협정에 조인한 4개 당사자로 구성되며, 휴전과 철군방식, 포로 및 외국인간인 송환문제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16조). 양자군사공동위원회는 남베트남내 양 당사자로 구성되며, 쌍방의 장악지역과 주둔형태 및 4자군사공동위원회의 활동 종료후의 남베트남의 휴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관할한다고 되어 있다(17조).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74*, vol. 935, no. 13295, 1977, pp. 6~17.

및 외국군 철수를 감시·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18조), 국제회의는 파리 평화조약(1973. 1) 조인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소련, 폴란드, 중국, 프랑스, 영국 및 협정 조인 4개 당사자 등 12개국에 참가·개최토록 하며, 베트남 평화협정의 이행을 국제적으로 확인·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19조).³⁶⁾

베트남 평화협정은 미국이 베트남전 개입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해 북베트남과 타협한 후 남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참가하여 체결되었다. 미국은 국내여론에 몰려 그간 제시했던 평화협정 체결 조건들을 점차 완화해 갔으며, 남베트남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레 득 토(Le Duc Tho)가 파리에서 秘密協商으로 문안을 매듭지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³⁷⁾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정주체 및 체결과정에서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평화협정 문안은 남베트남이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북베트남간의 비밀협상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남베트남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둘째, 이 협정은 남베트남내에 2개의 主權的 實體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또다른 武力紛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협정의 네 당

36) Ibid.

37) 남북베트남간의 이견은 주로 境界線으로 설정된 북위 17도선에 대한 남북베트남간의 인식 차이와 북베트남의 남베트남내 무장해방 투쟁 방침 고수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사자중 정부로 명기된 것은 미국과 북베트남이며, 남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남베트남지역내의 두 當事者로 명기되어 있어서 어느 실체가 남베트남을 정식으로 대표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셋째, 베트남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자로서 베트남 분쟁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수많은 국가(12개국)가 참여함으로써 베트남 분쟁을 효율성있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넷째, 이 협정은 남베트남 주둔 북베트남군(미국 측 추계: 15개사단, 145,000명)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남베트남내 두 당사자인 남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두 당사자들은 협정에 규정된 90일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북베트남군의 남베트남 주둔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북베트남군의 남베트남내 殘留 묵인과 베트남주둔 미군철수는 북베트남의 對南侵略 기반을 제공한 반면, 남베트남의 방어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베트남 평화협정의 폐기 및 남베트남의 멸망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³⁸⁾

베트남 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주는 示唆點을 살펴보면 다음

38) 닉슨 행정부는 1974년 3월 7일 의회에 對베트남 추가 군사지원안을 제출하였으나, 하원에서 부결되었으며(3.12), 남베트남 내부에서는 권력층의 내분 및 지식인 등의 반정부활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베트남은 1974년 말 전세가 역전되자 1975년 3월 11일 남베트남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4월 1일 무기공급을 재개하였으나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결국 미국은 4월 21일 파병중단 선언에 이어 4월 23일 인도차이나 지역의 개입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남베트남은 4월 30일 항복하였다.

과 같다. 첫째, 협정 준수의 기본인 平和意志가 상대방(북베트남)에게 없는 상태에서 주요 문제(남베트남지역내 兩實體間關係 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도 없이 勢力均衡 유지 및 평화의 핵심적 보장세력이었던 미군이 철수한 것이 베트남 평화조약을 실패로 이끌고 베트남패망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적 보장을 위한 制裁裝置가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평화조약은 실효성있는 평화보장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평화는 협정만으로 달성·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의 실질적 여건이 그에 부합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意志와 能力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보장조약이 체결될 경우,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平和維持 意志가 확인되고 신뢰구축 및 군축 등 구체적인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2+16+2」 보장방안의 장단점

이 방안의 장점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의 당사국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 당사국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고, 한국전쟁 참전16개국과 중·러가 참여하는 해결방안이므로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보장조약의 당사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단점은 첫째, 한국전 이후 오랜세월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당사국이 아닌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保障力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에 참

여하는 반면 일본이 제외됨으로써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 東北亞 安保協議體에 의한 보장방안

가. 유사 사례 및 시사점: 유럽안보협력회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³⁹⁾는 1975년 헬싱키협정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 형성된 동서 양 진영간의 國境不可侵을 인정하고, 政治的 現實 인정과 유럽의 안전 및 평화를 위해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유럽 전반에 政治的 信賴構築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립되는 양진영간 신뢰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독일은 이를 기반으로 이산가족의 재회, 여행·왕래의 자유, 인권존중, 언론집회의 자유 등을 실현시킴으로써 동서독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증대를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성립 배경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배경과 관련, 1945년 이후 소련외교의 주요 목표는 유럽에서 영토적·정치적 現狀維持를 서방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다. 1954년 몰로토프(V. M. Molotov) 소련

39)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94년 12월 5~6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개칭하고 보다 조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외무장관은 이 목표 추구를 위해 그리고 유럽防衛共同體의 창설 및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미·영·불·소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의 안전보장에 관한 쏘유럽 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1966년 제23차 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서방측은 소련이 동구 지배를 고정화하는 동시에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약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고, 1968년 소련의 제안에 대응하여 중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相互均衡減軍會談(MBFR) 개최를 제안하였다.⁴⁰⁾

1971년 5월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은 서독이 취한 일련의 동방정책의 진전과 미·소 정상회담의 성공 등으로 동서 유럽에서 긴장완화 무드가 확대되자 서방측이 제안한 相互均衡減軍會談에 응할 의사를 표명 하였고, CSCE에 미국과 캐나다가 참석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방도 소련의 제의에 응하게 되어 1972년 11월 헬싱키에서 유럽 33개국과 미·캐나다 등 35개국 대사가 참가한 CSCE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그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1975년 8월 1일 CSCE 참가국 35개국 정상회의에서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가 채택되었다.⁴¹⁾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헬싱키 최종 합

40) Alvin Z. Rubinstein, *Soviet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Cambridge: Winthrop Publishers, 1981), pp. 110~111.

41) Ibid.

의서」(이하 헬싱키 협정)는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제반 영역의 국가간 협력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개 분야(basket)로 나뉘어져 있다.⁴²⁾ 즉 헬싱키 협정은 첫째,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10대 원칙과 信賴構築 및 軍縮을 포함한 유럽안보문제, 둘째, 경제·통상·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국가간 協力問題, 셋째, 인도주의적 접촉과 정보의 자유로운 전파 및 교육·문화 교류 등을 다루고 있다.⁴³⁾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및 헬싱키 협정의 意義 및 評價와 관련, 최초의 CSCE 합의서인 헬싱키 협정은 동서 양 진영간 相互 認定과 平和共存, 그리고 개방 및 교류협력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에

42)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IV, no. 5, September 1975, pp. 1292~1325.

43) 국가간 관계에 관한 10대 원칙은 ①주권의 평등과 존중, ②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의 억제, ③국경 불가침, ④영토주권의 존중, ⑤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내정 불간섭, ⑦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⑧인민의 평등과 자결권, ⑨국가간의 협력의무, ⑩국제법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또한 첫번째 분야에 포함된 「신뢰구축 조치와 안보·군축의 제 측면에 관한 文書」는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의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군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병력 2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에 대한 21일전 사전통보와 군사훈련 참관 옵서버의 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분야에서는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다루고 있고, 셋째 분야에서는 인도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접촉, 특히 이산가족의 재회와 외국 시민과의 결혼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보·문화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의서에 포함된 조치들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후속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서 체결되었으며 유럽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헬싱키 협정은 유럽에서의 現狀承認, 國境의 不可侵 등을 규정, 소련의 동구 지배와 동서독의 분단을 소유립 국가가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련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기여한 것이었다.⁴⁴⁾

그러나 헬싱키 선언의 인권 존중, 이동 및 언론 자유 등의 요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와 함께 동구 전역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즉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하벨 등 많은 지식인·예술가들이 헬싱키 선언의 인권존중, 언론의 자유 등을 내세워 공산당정권의 탄압에 저항하였고, 1980년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이끄는 自由勞組가 공산정권에 저항하였다. 1989년 5월 헝가리정부가 「철의 장막」을 개방하여 동구 격동의 시초를 마련한 것도 移動의 自由를 선언한 헬싱키정신에 기초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⁵⁾

특히 이미 동방정책으로 독일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브란트 수상은 헬싱키협정을 통해 유럽의 國境線을 인정하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반면 그는 대가로 독일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재회, 여행·왕래의 자유, 인권존중, 언론집회의 자유,

44) Adam Daniel Rotfeld, "The CSCE Process and European Security," in Kari Möttölä, ed., *Ten Years after Helsinki*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p. 10~25.

45) Thomas Buergenth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Helsinki Final Act: Conclusions," in Thomas Buergenthal, ed.,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s* (Monclair: Allanheld, Osmun & Co. Publishers, 1977), pp. 3~10.

인론인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무력에 의하지 않는 국경선의 평화적 변경승인 등의 條項을 헬싱키 선언에 삽입시킴으로써 동서독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증대를 가능케 하였다.

CSCE는 1975년 헬싱키 협정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형성된 동서 양 진영간의 國境不可侵을 인정하고, 정치적 현실 인정과 유럽의 안전 및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政治的 信賴構築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립되는 양진영간 신뢰기반을 조성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現狀認定의 기반 위에 초보적인 수준의 軍備統制가 이루어졌고,⁴⁶⁾ 1986년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Agreement)으로 더욱 진전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감축협상 및 1990년 유럽

46) 이 합의서에서는 25,000명 이상이 동원되는 대규모 軍事訓練은 21일전에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훈련참관 옵서버를 자발적으로 초청하도록 권장하는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들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헬싱키협정의 신뢰구축 조치들은 ①일상적인 군사활동만을 규정하고 있고, ②훈련참관 초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자발적 의사에 의한 훈련참관 초청), ③신뢰구축 조치와 군비감축과의 분명한 연계가 결여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부터 3차례(제1차 베오그라드 1977. 10~1978. 9; 제2차 마드리드 1980. 11~1983. 9; 제3차 스톡홀름 1984. 11~1986. 9)에 걸쳐 「유럽에서의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와 군축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CDE)후 1986년 9월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10개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기습공격의 위협이나 誤判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군사활동을 노출시키고 확인·감시하는 진전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John Borawski and Stan Weeks, "The Stockholm Agreement of September 1986," *Orbis*, vol. 30, no. 4 (Winter 1987), pp. 644~659.

재래식군사력(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 감축협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CSCE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會議體的 機構로서 분쟁방지 또는 불가침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조직체계와 운영상 많은 미비점을 갖고 있다.⁴⁷⁾

CSCE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에 주는 교훈 및 示唆點과 관련, CSCE가 지역국가간 협력·교류를 촉진하는 협력체로서 유럽 평화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은 地域協力에 있어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남북협상만이 아니라 지역협력 차원에서 모색하는 한편, 이를 위해 남북한 및 주변국가간에 동북아 안보협의체 등의 多者間 地域協力體를 구축, 지역문제에 대한 협의 및 국제적 협조를 정례화하여 한반도내의 분쟁방지와 위기극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CSCE가 유럽에서 동서간 국경불가침을 인정하고 현상을 승인함으로써 대립되는 양진영의 신뢰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신뢰기반위에 상호간 교류와 軍事的 信賴構築, 軍備縮小(1990년 CFE 협정)까지 이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남북한간 현후전선 인정과 남북한 현 체제를 相互 認定하

47) CSCE는 합의도출 방식에 있어 만장 일치의 회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990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CSCE 정상회담에서 CSCE의 상설화 작업의 일환으로 정상회담과 외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프라하에 사무국, 비엔나에 紛爭豫防센터 그리고 바르샤바에 自由選舉 事務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야 정치적 신뢰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과 군축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CE의 경험에 비추어 동북아지역에서도 多者間 安保協力機構를 통해 지역적 교류협력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정치적 민주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운영면에서 CSCE는 法的 拘束力이 없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會議體的 機構로서 합의도출 방식에 있어 만장일치의 회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독자적 군사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紛爭豫防 또는 不可侵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거나 지역안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조직체계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⁴⁸⁾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아·태지역이나 동북아지역에 CSCE와 같은 集團安全保障型 機構를 창설한다는 구상은 이 기구가 지역적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국가들의 다양한 안보 이해와 다루는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회의체적 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분쟁예방 또는 불가침을 효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平和保障機構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8) 이는 최근 유고사태에 대한 CSCE의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나. 동북아안보협력회의에 의한 보장방안의 장단점

동북아안보협력회의는 동북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국가들간에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小地域主義的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한다는 구상으로 주변당사국들의 수락 여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안보문제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장기적인 신뢰구축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같은 多者間 東北亞會議이 구체화되는 경우 처음에는 이 기구의 협의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초보적인 신뢰구축 수준의 합의만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기구가 협의회적 성격의 기구로부터 집단안보기구로 발전하여 한반도 군축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반의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 신뢰구축조치들을 촉진시켜나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단점은 동북아 안보대화가 동북아시아의 小地域 多者間協力體로 조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단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방안은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2+2」 혹은 「2+4」 방안이 실행된 이후 한반도 군비통제를 동북아시아 군비통제와 연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남북한 당사자들이나 주변4국이 합의하고 보장한 사항을 추진 혹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제한된 효과 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6.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보장사례들을 살펴볼 때, 로카르노 협정처럼 지역분쟁 당사국의 평화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少數의 강대국이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국제적 보장이 成功的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나, 아프가니스탄 협정에서처럼 분쟁의 실제 당사자가 不參하거나 베트남 평화협정의 경우처럼 실제적 보장능력이 없는 다수의 국가가 보장자로서 참가할 경우 失敗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북아 안보협약체 등에 의한 보장은 협약체적 성격상 장기적인 신뢰구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에는 제약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國際的 保障方案은 휴전당사자라는 법적 지위, 남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실효성 있는 보장력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남북한 간 實體認定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者間(남북한·미·중)條約이나 별도의 美·中間 條約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2+2).

우선 남북한간에 실제 인정을 전제로 平和協定을 체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민족자결원칙과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하고 평화체제 전환문제도 남북 당사자간에 논의·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 위의 국제적 보장 사례에 대한 고찰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가 제외된 어떠한 국제적 보장사례도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美·中이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미·중은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로서 남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2+1」 방식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도 조셉 나이 국방차관보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2」 방식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2」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보장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희망하는 일·러에 대해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2」 방식을 채택할 경우 日本은 중국과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에서 패배감을 느낀 나머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건전한 정치·경제·외교적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게 될 위험

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협정을 미·중이 보장하는 「2+2」 방식을 추진한 후 이를 일·러가 다시 추진하는 「2+2+2」 방식을 추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러의 追認이라는 개념에는 일·러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2+2」 보장 방식에 대해 2차적으로 보장을 확인하고, 그 실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實踐事項(평화감시 및 중재 역할 등)에 대한 일·러의 참여를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보장방안이 실행·완결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통한 3차적 보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유엔안보리의 추진 내지 지지결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VII. 結論

북한 핵문제 대두이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 강화차원에서 수시로 平和協定 체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의 實體를 부정하는 가운데 美國과의 直接對話를 통한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양국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거론하여 미국을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제협력과 실리를 얻어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동시에 이것을 김정일의 외교적 업적으로 부각·선전함으로써 金正日體制의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구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 실현을 위한 道具에 지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평가와 관련, 「정통정부」(평양)과 「비정통정부」(서울)간의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전제위에서 미군의 개입을 침략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첫째,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향후 남북한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선반도의 문제는 민족내부문제」라는 구실하에 미국의 개입

을 차단하며, 셋째,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의 군사력 및 안보태세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聯邦制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대남전략을 目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바로 이러한 대남전략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아직도 이러한 목표를 포기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 카네기재단의 셀릭 해리슨은 1995년 9월 방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이 駐韓美軍의 무기한 주둔을 양해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보다는 「북·미 상호안보협의회 구성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제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⁴⁹⁾ 이는 기존의 북한 주장과 사실상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우선 첫째, 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동북아전략상 이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실현불가능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주한미군 존재가 북한의 體制安保에 위협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미 관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北·美間의 軍事關係를 개선시키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의 기존 전략과 전혀 차이없는 것이다.

둘째, 「북·미 상호안보협의회 구성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철회하고 남북대화를 수용한 과감한 조치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 또한 韓半

49) 「中央日報」, 1995. 9. 28.

島 政治·軍事問題를 미국과만 논의하겠다는 기존 전략과 다름 없는 것이다. 즉 북한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가동시키고 실질적인 문제는 모두 북·미 상호안보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기본적으로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政治的 意志의 문제로서 진정한 平和共存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에 진정한 평화공존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또한 남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興件과 霧圍氣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原則, 條件, 當事者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精神으로 돌아와 동 合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실천할 때만이 비로소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정전기구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정전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핵동결조치를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이며, 동시에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마땅히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북·미간에만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용인될 수 없고 또한 용인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남북한이 7천만 민족구성원 앞에서 엄숙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명시된 當事者解決原則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南北對話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북한이 제의하고 있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의도와 문제점, 허구성을 명백히 지적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姿勢 轉換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당사자해결원칙, 관련국의 협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실효성 보장원칙 및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 기체결조약 존중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직접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국방정보본부. 「軍事停戰委員會 便覽」. 서울: 국방정보본부, 1986.
- 國土統一院. 「南北對話 白書」. 서울: 國土統一院, 1988.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Ⅱ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Ⅲ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Ⅳ집」. 서울: 國土統一院, 1988.
- 吉炆宇 외.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金圭倫, 全東震. 「東北亞 多者間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3-0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金明基.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 내외통신. “대미평화협정 공세 강화배경.” 주간판. 제943호. 서울: 내외통신사, 1995. 3. 9.
-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關係와 美國」. 민족통일연구원 세

- 미나시리즈 94-02.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민족통일연구원.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민족통일연구원 연례정세보고서 94-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민족통일연구원.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민족통일연구원 연례정세분석보고서 94-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백종천, 이민룡 공저. 「한반도 공동안보론」. 서울: 일신사, 1993.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申相振·全東震.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보에 미칠 影響」.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1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전동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09.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諸成鎬.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1-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통일원.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제1권」. 서울: 통일원, 1991.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52호, 1991.

Albrecht-Carrié, René.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London: Methuen, 1967.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IV, no. 5, September 1975.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 no. 6, November 1978.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 2, March 1979.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XVII, no. 3, May 1988.

Asia Society.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an Asia Society Research Project for the Rockefeller Foundation, 1993.

Bailey, Sydney D.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5, 199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 Military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Washington, D. C.: The Library of Congress, September 27, 1994.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1995.
-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15, Part 2.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Drifte, Reinhard. *Japan'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Case of Arms Control*. London: The Athlone Press, 1990.
- Goodrich, L. M. *Korea: A Study of United State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 Greenspan, M.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59.
- Kelsen, 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Holt, 1967.
- Lyou, Byung-Hwa.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umber 2-1986 (73). Maryla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 Niksch, Larry A. *CRS Issue Brie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16, 1994.
- Niksch, Larry A. *South Korea: U.S. Defense Oblig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1994.
- Phillipson, C. *Termination of War and Treaties of Peace*. London, 1961.

- Quandt, William B. *Camp Davi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80.
- Rubinstein, Alvin Z. *Soviet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Cambridge: Winthrop Publishers, 1981.
- Schwarzenberger, G. *The Law of Armed Conflict*. London: Stevens, 1968.
- Shinn, Rinn S. and Robert G. Sutter.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CRS Report for Congress, 1994.
- Starke, J. G.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1984.
- Stone, Julius. *Legal Control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and London, 1973.
- Testimony of Robert L. Gallucci, Ambassador at Large on the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cember 1, 1994.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of the 3rd Session. Part I, 1948. 1st Committee. Paris: Palais de Chaillot, 1948.
-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74*. vol. 935, no. 13295, 1977.
- Benichi, Régis. ed. *Le Livre de L'Europe*. Paris: Stock, 1990.
- Berber, Friedrich. ed. *Völkerrecht Dokumenten-sammlung*. München und Berlin: C. H. Beck, 1967.

- Dollot, Louis. *Histoire Diploma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1.
- Korinman, Michel. *Quand l'Allemagne pensait le monde*. Paris: Fayard, 1990.
- Puaux, François. *La Politique internationale des années quatre-vingt: De Reagan à Gorbatchev*.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 「周恩來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84.
- 杜平. 「在支援軍總部」. 第2版.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1.
- 防衛廳 編. 「防衛白書」(1994).

2. 논문

- 강원식. “러시아의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 「중소연구」. 제17권 제4호, 1993/4 겨울.
- 강철수. “미국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5. 3. 3.
- 길재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의 정당한 조치.” 「근로자」. 제7호, 1981.
- 吉炆宇. “北·美關係와 韓國: 過去, 現在와 未來.” 「南北韓關係와 美國」.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4-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金明基. “北韓의 軍事停戰委員會에서의 撤收와 國際法.” 「北韓學報」. 제18집, 1994.
- 金明基. “韓國軍事停戰協定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25권 1/2호 합병호 (1980).
- 金明基. 「分斷韓國의 平和保障論」. 서울: 法志社, 1988.
- 裴載湜. “南·北韓의 UN加入과 法的 問題.” 「韓國統一政策研究論叢」. 제2권, 1993.

- 白珍鉉. “休戰體制的 平和體制로의 轉換: 問題點과 對策.” 「主要國際問題分析」. 1994. 10. 19.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 白珍鉉. “休戰協定體制的 代替에 관한 小考.” 「統一問題研究」. 제3권 4호, 1991.
- 白珍鉉. “休戰協定體制的 代替에 관한 小考.” 「統一問題研究」. 제3권 4호, 1991.
- 신상진. “중국의 동북아정책 전망: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남북한관계 현황 및 94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3-0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柳炳華. “한국통일에 관련된 몇가지 국제법적 문제.” 「國際法學會論叢」. 제33권 제2호, 1988년 12월.
- 柳炳華. “韓國統一에 관련된 몇가지 國際法的 問題.” 「國際法學會論叢」. 제33권 2호, 1988.
- 李長熙. “韓國 停戰協定の 平和體制 轉換을 위한 法制度的 方案.” 李長熙 편저. 「21世紀를 대비한 韓國의 當面課題: 改革, 環境 그리고 統一」.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 李長熙. “韓國停戰協定の 平和協定體制로의 轉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9권 1호, 1994.
- 이채진.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동북아 안보정세와 통일전망」. 1993. 11. 19~20.
-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1호, 1994.
- 諸成鎬. “韓國軍 作戰權과 그 還元問題.” 국토통일원. 「軍縮 및 軍備統制에 관한 研究」. 서울: 국토통일원, 1989.
- 韓庸燮.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한

- 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시리즈 95-01. 1995. 6. 21.
- Atherton, Alfred L. Jr. "Arabs, Israeli and Americans: A Reconsideration." *Foreign Policy*. vol. 62, no. 55, Summer 1984.
- Borawski, John and Stan Weeks. "The Stockholm Agreement of September 1986." *Orbis*. vol. 30, no. 4, Winter 1987.
- Buergenthal, Thom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Helsinki Final Act: Conclusions." in Thomas Buergenthal. ed.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s*. Monclair: Allanheld, Osmun & Co. Publishers, 1977.
- Collins, Joseph. "Soviet Policy toward Afghanistan." in Robbin F. Laird. ed. *Soviet Foreign Policy*. Monpelier: Capital City Press, 1987.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 Grant, Richard L. "China and Its Asian Neighbors: Looking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7, No. 1, Summer 1994.
- Grewe, Wilhelm G. "Peace Treaties."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 Amsterdam, New York, Oxford: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 Guo Zhenyuan.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
亞 秩序·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
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3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
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北韓의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研究報告書 95-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9月 日
發行日 1995年 9月 日
